

연구
보고서

2021

03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이경희

머리말

2015년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도 더욱 확대되어 2020년 3/4분기에는 GDP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기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금융기관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중과 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차입기간도 30년 이상 장기 비중이 높지만, 차주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인한 변제불능 위험에 대해서는 과소보장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계부채에 잠재된 위험을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신용생명보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이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활용됨을 예시한다. 미국은 신용보험에 대한 경험이 1세기를 넘어선 시장으로 공익을 위해 감독당국이 엄격한 보험요율과 보수한도 규제를 두고 있지만, 틈새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캐나다와 일본도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 과소보장된 부채보유 가구의 보장공백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생명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동 상품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4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 필요성	2
2. 선행연구	5
3. 연구 내용 및 구성	7
II.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9
1. 미국	9
2. 캐나다	34
3. 일본	41
III.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48
1. 현황	48
2. 잠재수요	59
3. 발전방안	64
IV. 맺음말	74
• 참고문헌	78
• 부록	82

표 차례

〈표 I-1〉 신용 관련 상품 비교	4
〈표 II-1〉 미국 신용보험 연혁	10
〈표 II-2〉 미국 신용보험 소비자 인식 조사	11
〈표 II-3〉 미국 신용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15
〈표 II-4〉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 제정 이유	16
〈표 II-5〉 NAIC 신용보험 가격 규제	17
〈표 II-6〉 미국 신용보험 손해율 추이(2008~2017년)	19
〈표 II-7〉 SOA 신용생명보험 경험실적	20
〈표 II-8〉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단생)	25
〈표 II-9〉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규정	26
〈표 II-10〉 뉴욕주 단체신용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한도(대출기간 10년 미만)	28
〈표 II-11〉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실적 추이 (만기 10년 미만, 1975~2019년)	30
〈표 II-1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보험료 규모	31
〈표 II-13〉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가입률 추이	32
〈표 II-14〉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권유 여부(할부 구입)	33
〈표 II-15〉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만족도 추이	33
〈표 II-16〉 캐나다 모기지대출 관련 보험상품	36
〈표 II-17〉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자 분포(2019년)	37
〈표 II-18〉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금액(2013년 vs. 2019년)	38
〈표 II-19〉 캐나다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40
〈표 II-20〉 Canada Life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40
〈표 II-21〉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금액 추이	42
〈표 II-22〉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42
〈표 II-23〉 Tokyo Star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43
〈표 II-24〉 일본 ‘플랫35’ 단체신용생명보험 유형별 대출금리	47
〈표 III-1〉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 규제 개선	50
〈표 III-2〉 신용생명보험상품 보장내용 예시	52
〈표 III-3〉 신용생명보험상품 보험료 예시	53
〈표 III-4〉 신용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53

〈표 III-5〉 신용카드사 DCDS 상품 보장내용 예시	56
〈표 III-6〉 DCDS 수수료 수입 및 보상금 추이	58
〈표 III-7〉 가계신용 규모	60
〈표 III-8〉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규모(2020. 3/4분기)	61
〈표 IV-1〉 부채 유형별 보유비율과 부채가구의 부채금액(2018년)	75

그림 차례

〈그림 I-1〉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
〈그림 I-2〉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 비교	3
〈그림 I-3〉 가계부채와 1인당 GDP 장기성장률 간 관계	7
〈그림 II-1〉 뉴욕주 신용보험 규정 구분	24
〈그림 II-2〉 미국 신용보험 실효해지율 추이	32
〈그림 II-3〉 캐나다 개인별 사망보장보험 가입률(2019년)	38
〈그림 II-4〉 SMBC Trust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44
〈그림 II-5〉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신용생명보험 구조	46
〈그림 III-1〉 DCDS와 개인신용보험 구조 비교	57
〈그림 III-2〉 DCDS 수수료와 신용보험 보험료 체계 비교	59
〈그림 III-3〉 가계신용 규모 추이 및 증가율	60
〈그림 III-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62
〈그림 III-5〉 부채유형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2018년)	63
〈그림 III-6〉 부채보유 가구당 부채금액(2018년)	64
〈그림 III-7〉 보험종목별 가입률(2019년)	65
〈그림 III-8〉 개인별 사망보험 가입률(2019년)	66
〈그림 III-9〉 사망보험 가입채널 선호(2019년)	66
〈그림 III-10〉 사망보험 가입률과 1년 내 가입 의향	67
〈그림 III-11〉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기간분포(2020. 3분기)	68

Credit Life Insurance Market in Major Countries and Development in Korea

Despite the recent COVID-19 crisis, Korea's household debt exceeds the nominal GDP as of Q3 2020. This paper proposes to make up for the risk of underinsured household debt using credit insurance. Credit life insurance provides cover for debtors' outstanding loan balance if they are unable to repay their loan due to death, accident & health,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Consumer credit insurance is develope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and Japan. In the U.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establishes the Credit Insurance Model Act to regulate premium rates and remuneration limits. Rate adequacy is reviewed every three years using the prima facie rates method. Canadian individuals have a 9% mortgage life insurance coverage. In Japan, the market for group credit life insurance related to long-term mortgage loans has developed since 1960s.

Korean credit insurance market is underdeveloped due to both low awareness and strict regulation. Potential demand exists considering the household's debt ratio and the size of debt. Nevertheless, the ownership of death protection insurance including credit life is significantly low level, and as a result, most of them are underinsu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supervisory regulations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o use group credit life insurance policy affiliated with public long-term mortgage loans. The insurance companies require the expansion of disruptive channels and target of millennial groups.

요약

최근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말 가계부채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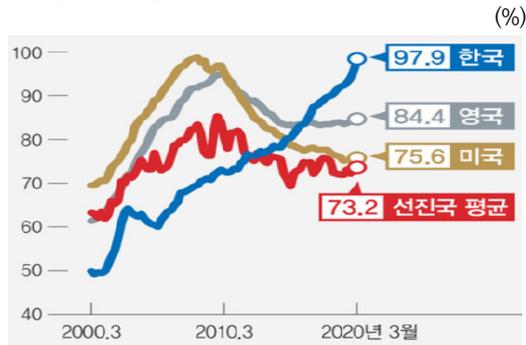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여 요율과 보수한도를 규제한다.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개념을 사용하여 3년 주기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이상 모기지대출신용보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감독당국은 채권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승인한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의 부채보유 비율 및 가구당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갖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출실행 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급증하면서 미국·영국을 추월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97.9%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¹⁾

〈그림 I-1〉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국제금융협회; 한겨레신문(2020. 9. 13),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에서 재인용함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었으나, 가계대출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4분기 말에는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초과(101.1%)하였다. 한 국가의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²⁾ 과도한 가계부채가 부채를 보유한 가계 및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1) 한겨레신문(2020. 9. 13),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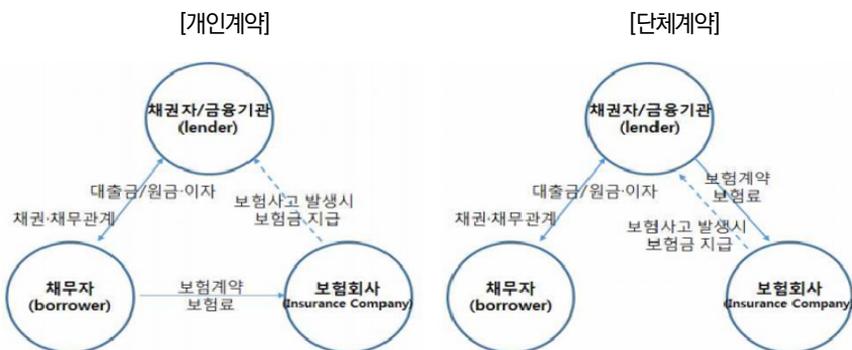
2) 국가별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Lombardi et al. 2017). 또한, 민간영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100%에 달하면 부채로 인해 성장이 저해된다는 연구도 있음(Arcand et al. 2015; Sahay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가계부채에 잠재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소비자신용보험은 대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을 통해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질병·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보험금으로 잔존부채를 변제하는 상품이다.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용어³⁾로 사용되는데, 미국에서는 담보위험에 따라 신용보험이 4가지 중목(Credit Life, Credit Accident & Health, Credit Unemployment, Credit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신용생명(Credit Life)과 신용상해질병(Credit Accident & Health)은 장기계약의 성격을 띠며 채무자 본인의 사망,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소비자신용보험 중 주로 생명보험 영역의 중목을 신용보험 또는 신용생명보험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족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출기관의 채무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과 적절한 판매방식이 갖추어진다면 충분한 효용을 갖는다.

신용보험의 계약관계는 <그림 I-2>와 같다. 개인계약에서는 채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단체계약에서는 채권자(금융기관)가 보험회사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따라서, 단체계약에서는 외연상 채무자와 보험회사 간 직접적인 관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I-2>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 비교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

3) 영국에서는 지급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으로 불림(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0. 4)

채무자인 차입자의 신용 관련 금융상품은 신용보험 외에 대출보증보험, 채무면제유예상품(DCLS: Debt Cancellation or Suspension Products)도 존재한다. 대출보증보험은 채무면제 후 원래 채무자나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는 신용보험이 더 바람직하다. 신용카드회사가 취급한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보험과 유사하지만,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2005년 최초 판매되었으나 불완전판매, 과도한 수수료 등이 문제로 대두되어 2016년 이후 신규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다.

〈표 I-1〉 신용 관련 상품 비교

구분	신용보험	대출보증보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보장위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채무불이행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보험 계약자	채무자(개인보험) 대출기관(단체보험)	대출기관	신용카드사
피보험자	채무자(차입자)	대출기관	채무자(차입자)
보험료 납입	개인보험: 개인이 납부 단체보험: 대출기관이 납부	대출기관이 납부	신용카드사가 납부
채무면제	보험금으로 채무상환, 구상 없음	보험금 지급 후 구상	보상금으로 면제·유예, 구상 없음
규제/감독	약관 및 요율검증 통해 상품설계, 판매보수 규제	좌동	별도의 규제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불완전판매 문제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을 통한 가계부채의 관리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활용도는 매우 미미하다. 주요 이유는 개인계약의 경우 은행 내 대출 창구와 보험 가입 창구가 분리되어 대출 직원의 상품 판매·안내가 원활하지 않고, 단체계약의 경우 은행의 판매수수료 추수가 금지되어 판매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차입자가 신용보험상품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 30일 「보험업법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제

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계약”, 즉, 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구속성(‘찍기’)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2019년 4월 16일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빚 대물림 방지법-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⁴⁾가 개최되었지만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2015~2017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상속인에게 대물림된 건수는 6,577건이며, 부채금액은 8,444억 원이라고 한다. 상속받은 건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한 미국, 캐나다, 일본의 규제 및 감독,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규제 및 감독, 그리고 시장 형성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2. 선행연구

신용보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경우 주로 신용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내용 중심이다(송윤아·마지혜 2016; 안철경·정인영 2018). 이지연(2018)은 일본의 민영 대출기관이 활용하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장내역과 관련 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외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용보험에 대한 역사가 길고 풍부한 시장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신용생명보험과 정기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연구로 Rubin(1978)이 있는데, New York Life에서 판매하는 체감정기보험상품과 Credit Life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 간 가격을 비교하였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연령·성·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두고 비교한 결과, 25세 남/녀 및 35세 남/녀의 경우 체감정기보험 가격이 더 저렴한 데 비해 50세 남/녀의 경우는 신용생명보험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차입자 사망 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가장 비용효율적(가입금액 대비 저렴한 보험료 부담)인 방법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특약으로 체감정기보험을 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성·연령·건강상태에 따라 체감정기보험이 신용생명보험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기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

4) 뉴스에이(2019. 4. 16), “박선숙 의원,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을 실시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피보험자는 그룹별 단일률을 적용하는 신용생명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은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높아지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 차선택으로 신용 생명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olquitt et al.(2012)은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의 역선택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에서는 감독당국의 가격 규제가 매우 강력하고, 단체계약 방식으로 인수하면 개인별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가입자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역선택을 통제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용생명보험은 가입 연령만 제한되며 건강상태는 고려요인이 아니므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더 높은 가입금액을 선택할 것이다. 둘째, 감독당국의 최고요율 제한(prima facie rates)에 따라 사망률이 높은 주(state)의 수요가 사망률이 낮은 주보다 높을 것이다. 1995~2007년 주별 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종속변수는 1인당 신용생명보험료, 설명변수는 인구 1,000명당 사망률로 두고 회귀분석하였다. 신용생명보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변수(가격, 소득, 실업률, 총 생명보험 가입금액, 교육수준, 자가보유율, 빈곤율, 신용대출 규모, 사기성향 등)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망률과 1인당 신용생명보험료 규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률이 높은 주에서 언더라이팅 기능을 완화하고, 가격 유연성이 낮은 신용생명보험을 더 많이 구입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저자들은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에 역선택이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보험회사는 역선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주별로 합산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별 미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Durkin and Elliehausen(2017)은 2017년 3~4월에 실시된 가계조사자료⁵⁾를 사용하여 미국의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할부구입 이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병보험 보유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의 신용생명보험 가입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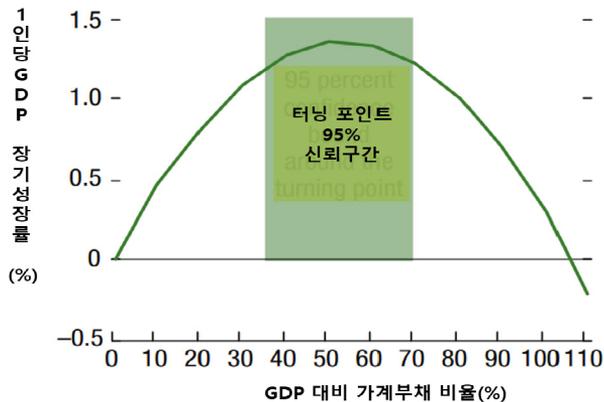
Durham(2015)은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연구기관(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생명보험 가입 이유를 파악하였다. 가입목적 상위 3

5) Survey Research Center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개(복수응답)는 사후정리(장례) 비용 마련(51%), 상실소득 대체(34%), 모기지대출 상환(26%)이다. 차입자가 사망, 상해·질병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신보험/정기보험/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IMF(2017)에서는 57개 국가의 1970~2010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1인당 GDP 장기성장률 간에는 비선형(역U자) 관계가 나타났다.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6~70% 수준에서는 장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가 한계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섰다. Lombardi et al.(2017)도 54개국 1990~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소비를 위축시키고, 80%를 초과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3〉 가계부채와 1인당 GDP 장기성장률 간 관계



자료: IMF(2017)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신용보험 발전과정과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은 거의 1세기 동안 차입자가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보험을 활용해왔다. 신용보험상품이 처음 출시된 국가로 가격(요율, 판매보수) 규제, 판매방식에 대

해 알아본다. 미국의 신용보험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주 감독당국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한다. 신용보험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기준 손해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규제하며, 판매보수에 대한 규제도 두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험법에서 신용보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출기간 10년 이상 장기 모기지대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소개한다. 캐나다 역시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이 발달된 시장으로 관련 상품과 요율,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부터 신용보험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단체생명보험시장의 약 절반 정도를 신용보험이 차지한다. 민영 대출기관(Toyko Star Bank, SMBC Trust Bank)과 공적기관(일본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보험시장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국내 신용생명보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가구의 부채 유형별 보유 현황, 부채금액과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보험) 가입률을 살펴봄으로써 노출된 위험 대비 보험 가입이 불충분함을 확인한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감독 측면에서 신용보험에 대한 체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 발전방안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한 대출 시 단체계약 방식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중반 출생자)를 목표집단으로 설정하고, 비용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수수료·보수 및 요율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취약차주 구성비가 높은 청년대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IV장은 해외사례와 국내 활용 필요성에 기반하여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한 선제적 위험관리 필요성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II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1. 미국

가. 연혁

1) 개요

신용보험의 기본 개념인 “빚을 상속시켜서는 안된다(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는 1917년 미국에서 신용보험 개발자인 Morris에 의해 착안되었다. 출시 이후 신용 거래 급증에 힘입어 신용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1951년에는 신용보험회사 200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신용보험협회(Consumer Credit Insurance Association)도 출범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신용보험을 제공(위험인수)하는 회사 유형은 종합보험회사, 전문신용보험회사, 캡티브보험회사로 구분된다.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대출기관은 은행, 금융기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등이다.

1960년 이전에는 단체계약⁶⁾과 개인계약⁷⁾ 주력회사로 구분되었으나, 1959년 단체계약에 대해 세법에서 특별공제를 부여하고, 업무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점차 단체보험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으나,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였다(Fagg and Hammerly 1991). <표 II-1>은 미국의 신용보험 관련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6) 단체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인 채권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채무자(피보험자)를 등록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수령하는 방식임(Frederick et al. 1968)

7) 개인계약에서는 차입자인 채무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표 II-1〉 미국 신용보험 연혁

시기	내용
1917	Morris 신용보험 개념 착안(“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
1949	NAIC 조사 착수를 통해 신용보험 문제점 파악
1951	소비자신용보험협회(Consumer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설립
1959	단체계약에 특별공제(1959 Tax Act)를 부여함으로써 단계계약 위주 시장 형성
1966	NAIC 1966 Proceedings 채택 신용보험 요율규제(prima facie rates): 적정 손해율 50% 수준
1968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정
1972	은행지주회사의 신용보험 자회사 설립 허용
1979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의 최저 손해율을 60%로 높임
1982	저축대부조합(S&L) 신용보험 판매 허용
1983	신용조합(Credit Union)이 신용보험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가능
1994	NAIC 신용보험모델규정(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서 최저 손해율 60% 명시

자료: Fagg and Hammerly(199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용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49년 NAIC는 관련 내용 조사 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 피보험자에게 보장범위와 비용을 알려야 함
-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권리 보유함
- 보험계약은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보장은 대출 전기간에 대해 제공해야 함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대출기관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됨
- 보험계약 취소 시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함
- 계약 취소 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

1954년 채택된 NAIC 규정이 현행 미국 신용보험 감독의 근간이 되었다. 신용보험 관련 서류⁸⁾는 주 보험감독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신용보험이 요구될 경우, 피보험자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활용하거나 동등한 보장금액의 타사 상품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소비자 인식 조사

미국에서 신용보험상품을 둘러싼 논쟁은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용보험상품을 구입한 사람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Colorado Study에서는 가입자의 90%가 재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0%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가입자의 20%, 미가입자의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 미국 신용보험 소비자 인식 조사

구분	주요 내용
1954 Colorado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험 가입자와 일반 국민의 신용보험에 대한 태도 조사 •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70%는 지인 추천 의향 있다고 응답 • 미가입자의 75%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 • 가입자의 20%는 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
1973 Ohio Univers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신용보험 이해수준 파악(구입, 가격, 보장대상) • 가입자는 보험 가입 사실 인지, 가입자의 대부분이 체감형 급부 선택 •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및 지인 추천 의향 있다고 응답 • 가입자의 20%는 신용보험 필요하다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주 보험감독청은 최고 요율과 기준 손해를 설정권 보유 • 감독관 33명은 직원이 법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1973년 Ohio University Study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입자는 대부분 본인의 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감형 급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의향이 있고,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미가입자의 60%가 지인에게 추천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8) 관련 내용은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역, 면책 사유 등임

3) 관련 연방법

채무자에게 신용보험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대출기관은 은행, 신용조합,⁹⁾ 여타 금융회사, 저축대부조합¹⁰⁾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감독 외 신용보험과 관련된 다른 연방법에서도 신용보험 관련 규제를 두고 있다.

가)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에서는 신용거래 관련 보험비용(insurance charges)을 차입자의 대출금액 한도 내로 제한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비용(finance charge) 산정 시 보험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Fagg & Hammerly(1991), p. 160).

- 차입자는 대출연장 전에 보험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음
- 대출연장을 위해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 아님
- 차입자는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님을 서면으로 통지 받음
- 차입자는 서면으로 보장내역에 동의함

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

195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Federal Reserve Board Regulations)은 은행지주회사가 신용보험 판매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어 1972년에는 은행지주회사가 신용보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9) 신용조합은 전통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되고 소유·운영되며 비영리기업으로 면세 혜택이 있음. 주로 기업 및 단체가 신용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함

10) 저축대부조합은 중산층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기관으로 조합원이 상호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다) 신용조합 규정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1971년까지 대출자에게 보험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983년 들어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허용되었는데, 1984년에 다시 자회사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자회사 이외 보험자로부터 신용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졌다.

라) 저축대부조합 규정

저축대부조합은 1982년 소비자할부 대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확대를 위해 신용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신용보험상품 구분

1) 상품 유형

미국의 신용보험상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 영역에 속하는 상품은 채무자의 사망,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며, 손해보험 영역에 속하는 상품은 채무자의 비자발적 실업과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물에 대한 위험을 보장한다.

가) 신용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은 차입자 사망 시 미상환 채무잔액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출기관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므로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잔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실질적 측면은 정기보험의 일부이지만, 정기보험과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집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신용상태가 양호한 집단만 정기보험 가입을 허락할 경우 저신용자는 정기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어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장점은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단체신용보험 계

약 시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신 보험료 수준은 정기보험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Credit Accident and Health)은 채무자의 상해, 질병 발생 시 대출, 기타 신용거래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disability)가 발생한 후 특정 기간(예: 14일, 30일) 이후부터 급부를 제공하거나, 장애 발생 첫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 신용실업보험

신용실업보험(Credit Involuntary Unemployment)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중 최대 4개월이나 6개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자발적 실업, 은퇴, 장해, 고의적 행위 및 노동쟁의 등이다. 가입자는 대출실행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특정 직종 종사자(자영업자, 독립적 하도급업자, 계절 종사자)는 제외된다.

라) 신용재물보험

신용재물보험(Credit Property)은 화재, 도난, 충돌, 기타 사고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되어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¹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담보가액에서 현재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 보험료 납입방식

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월납으로 부과된다. 일시납은 대출 개시시점에 전체

11) NAIC 규정 375. Credit-Placed Insurance에 해당함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대출원리금(principal of the loan)에 가산된다. 일시납의 보험요율은 최초 가입금액에 대해 \$100당 연간 기준으로 표시한다(예: \$0.71/\$100/year). 월납은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은 가입금액 \$1,000당으로 표시한다(예: \$0.69/\$1,000/month).

3) 보험료 부담방식

신용보험계약에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주체는 채무자일 것이나, 외형상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일괄표시(non-contributory insurance)와 구분표시(contributory insurance)로 나뉜다.

일괄표시는 보험비용을 대출금액에 포함시켜 차입자가 식별할 수 없는 방식이다. 주로 대출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신용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신용조합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미신용조합(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은 조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모든 차입자에게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담하는 신용보험 보험료를 원래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신용조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보험시장은 채무자인 차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보험비용을 대출금액과 구분하여 차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 II-3〉 미국 신용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부과방식	특징
일괄표시/채권자 부담 (non-contributory co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가 보험비용을 흡수해서 단체보험방식으로 제공 • 가입자 선택 불필요 • 대출금리에 보험비용 가산
구분표시/채무자 부담 (contributory co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보험료 부담 • 채무자가 신용보험 가입 여부 선택 • 대출금리와 구분하여 보험비용 납부

다. NAIC 규제 및 감독¹²⁾

1) 규제 이유

미국에서도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두고,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규제 분야는 급부의 적정성, 즉 보험요율과 판매 관련 보수한도이다. NAIC는 <표 II-4>와 같이 모델법 제정 이유를 채무자 및 일반 국민 보호,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고 있다.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대출, 그 밖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소비자신용보험을 규제하는 법규로서 다음 사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저당 또는 신탁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선순위 모기지, 부동산 구입 또는 건설자금 대출
- 채무자에게 식별 가능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보험
- 매출채권보험

<표 II-4>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 제정 이유

번호	제목	특징
360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신용보험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 • 종목을 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보험으로 구분 • 제외: 선순위 모기지, 신탁계약 관련 보험, 차입자에게 식별 가능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보험
365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리 증진, 법체계 구축 • 대출기관과 보험회사 분리 유지 • 불공정경쟁행위 최소화, 경쟁제한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
370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신용보험 요율(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 • 계약형태, 운영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와 일반 국민 이익 보호
375	Creditor-Placed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관(채권자)이 차입자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해 법체계 구축 • 대출기관과 보험회사 분리 유지, 불공정 경쟁관행 최소화 등

자료: NAIC(2019)

12) Fagg and Hammerly(1991), pp. 59-61 자료를 참고함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에서는 신용보험 가입 전 아래 내용을 차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Section 6. A).

- 신용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대출 승인 여부와 무관함
- 2개 이상 신용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구입하거나 패키지로 구입 가능함
- 가입조건
- 소비자가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용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입 후 30일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 보장내역
- 월납 계약의 경우 대출금리와 동일한 이자율로 보험료가 합산되어 총 상환금액이 결정된다는 사실

NAIC는 신용보험의 급부에 대해 부과한 보험료 대비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³⁾ 1966년에는 모든 주에서 신용보험 관련 모델법이 제정되었으며, 적절한 최저 벤치마크 손해율을 5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979년 들어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기준 손해율이 6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NAIC가 경험데이터를 집적하고, 연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II-5〉 NAIC 신용보험 가격 규제

구분	주요 내용
1957 NAIC Mortal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평균 보험요율: \$0.271/100/year • 1956년 평균 보험요율: \$0.285/100/year • 기준 보험료 상품 구성: 단체계약 70% + 개인계약 30%
1964 NAIC Mortal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손해율 50%하에서 기준요율이 \$0.30/100/year인 주들은 요율을 \$0.60/100/year 수준으로 인상
2018 NAIC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생명보험회사(129개), 신용상해질병보험회사(116개) 대상 • 경험통계 분석(2013~2017, 순보험료/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손해율)
1978 SOA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리사회에서 신용보험위원회 구성, 경험데이터 Pilot 분석
SOA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2009/2017 Credit Life Mortality Study 수행 • 신용보험 관련 경험 데이터 분석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13)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Section 4. Determination of Reasonableness of Benefits in Relation to Premium Charge

2) 보험요율

가) 기준요율

NAIC는 신용보험 요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이하, '기준요율'이라 함) 또는 벤치마크요율 개념을 사용한다.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요율을 준수할 경우 보험급부의 적정성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요율을 사용할 경우 감독당국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요율 산정방식은 일시납 기준과 월별 미상환잔액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100당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로 표현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¹⁴⁾

$$S_p = \sum_{t=1}^n \left(\frac{O_p}{10} \times \frac{I_t}{I_i} \times (v^{t-1}) \right)$$

$$v = \frac{1}{1 + (dis)}$$

S_p = 최초 신용보험 가입금액 \$100당 일시납 보험료

O_p = 월납 미상환잔액에 대한 기준요율

I_t = t 월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

I_i = 최초 보험 가입금액, 대출금 원리합계와 동일한 값

dis = (이자율 + 사망률)에 대한 연간 할인율¹⁵⁾

n = 보험계약 기간 총 개월수

위 산식의 표현과 같이 실제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요율,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납 보험료는 월납 보험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상환잔액 \$1,000당 요율로 표현된다.

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Section 6. Credit Life Insurance Rates, A. Premium Rate, (2) Single premium basis

15) 3년 주기로 할인율을 점검하여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3년 평균값으로 조정함

나) 경험통계 보고

보험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주 감독당국과 NAIC에 매년 영업성과를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NAIC에서는 각 주별 승인 데이터¹⁶⁾를 작성한다. 주 감독당국에서는 3년 주기로 설정한 기준 손해율(loss ratio standards)과 기준요율을 점검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이 되는 예상 손해율을 결정하고, 과거 3년간 실제 손해율과 비교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한 보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3년 동안 해당 주에서 적용할 개정된 기준요율을 발표한다. <표 II-6>은 NAIC가 발표한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의 손해율이다. 2008~2017년 평균 손해율은 신용생명보험 46.1%, 신용상해질병보험 38.7% 수준이다.

<표 II-6> 미국 신용보험 손해율 추이(2008~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순보험료	손해율	순보험료	손해율
2008	1,098	45.32	1,244	40.34
2009	805	45.12	939	43.45
2010	772	47.64	877	45.23
2011	758	46.98	870	41.79
2012	756	45.72	884	41.24
2013	740	47.70	892	36.72
2014	738	47.55	884	34.93
2015	731	45.21	851	33.84
2016	671	44.27	786	32.40
2017	627	45.74	770	31.64
평균	770	46.09	900	38.67

자료: NAIC(2018)

경험요율 분석을 위해 NAIC는 보험계리사회(SOA: Society of Actuary)에 신용보험위원회(Credit Insurance Experience Committee)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신용보험계약의 최근 경험사망률과 NAIC 기준(mortality reserve standard)을 비교하고, 신용보험계

16) Credit Insurance Supplement-Annual Statement Blank

약의 최근 경험사망률과 이전 경험사망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계리사는 산업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¹⁷⁾

SOA가 채권자(자동차 딜러, 소매은행, 신용조합, 기타 금융회사)가 판매한 신용생명보험의 경험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7>과 같다. 가입금액 평균값(Average Inforce Exposure)은 2002년 조사(\$7,361) 대비 2009년 조사(\$8,568)에서는 상승하였으나, 2017년 조사(\$4,674)에서는 크게 하락하였다. 분석 대상 전체 계약의 예정 대비 실제(Actual-to-Expected) 위험손해율은 금액 기준 63~76% 수준이며, 건수 기준 63~81% 수준이다.

<표 II-7> SOA 신용생명보험 경험실적

(단위: 개, %, \$)

구분		2002 Study	2009 Study	2017 Study
대상 기간		1998~1999년	2003~2006년	2011~2015년
데이터 수집 시기		2001년 여름	2008년 여름, 가을	2017년 가을
자료 제공회사 수		27	41	24
(지급금 = 0 제외 회사 수)		(26)	(35)	(22)
전체	금액 기준 A/E	76.05	63.68	69.76
	건수 기준 A/E	80.09	63.41	81.10
A/E <100	금액 기준 A/E	81	74	91
	건수 기준 A/E	77	89	95
지급보험금 평균값		7,452	9,556	4,250
가입금액 평균값		7,361	8,568	4,674

주: A/E = Actual-to-Expected(예정 대비 실제 지급률, 위험손해율)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SOA는 2009년 조사 대비 2017년 조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액과 평균 보험 가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 데이터 제출회사의 특성과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들었다. 즉, 대형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고, 은행과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한 상품은 감소한 반면, 기타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상품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7) SOA는 가입자, 보험산업, 정책당국 및 일반 소비자에게 계리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슈 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함

다) 요율조정

신용보험상품 관련 규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준요율은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기준요율을 사용할 경우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더 높은 요율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요율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요율은 경험기간(예: 1년, 2년, 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는 없다.¹⁸⁾

기준요율은 각 주별로 그 주에서 인수된 신용보험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일부 주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은행, 신용조합, 여타 금융회사, 자동차판매회사 등) 유형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별 규제는 <부록 I> 표에 수록하였다. 기준요율은 실제 보험금 지급 원가를 측정하여 기준 손해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기준요율: \$0.55/100/year
- 기준 손해율: 50%
- 실제 손해율이 60%일 경우 보험금 지급 원가 산출

$$\begin{aligned} \text{보험금 지급 원가} &= \text{실제 손해율} \times \text{기준요율} \\ &= 60\% \times \$0.55/100/\text{year} \\ &= \$0.33/100/\text{year} \end{aligned}$$

- 개정된 신규 기준요율

$$\begin{aligned} &= \frac{\text{보험금 지급 원가}}{\text{기준 손해율}} = \frac{\$0.33/100/\text{year}}{50\%} \\ &= \$0.66/100/\text{year} \end{aligned}$$

즉, 실제 손해율(60%)이 기준 손해율(50%)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요율도 산식에 따라 인상 (\$0.55/100/year → \$0.66/100/year)된다.

18) 주 보험감독청이 설정한 기준요율이 절대적인 최고 요율은 아님. 만약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체 사업에서 기준 손해율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요율 인상 또는 할증을 요구할 수 있고, 감독당국이 승인할 경우 기준요율보다 높은 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 일부 주에서는 경험 손해율이 기준 손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mandatory downward deviation)

라) 주별 NAIC 모델법 채택

NAIC는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의 기준 손해율을 각각 60%로 규정하였으나, 신용실업보험과 신용재물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NAIC 모델법을 채택한 대부분의 주는 3년마다 합리적 수준으로 예상되는 기준 손해율을 발표해야 한다.¹⁹⁾ 주별로 기준 손해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신용생명보험은 50%, 55%, 60% 수준이며, 신용상해질병보험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시간주는 기준 손해율이 없지만, 보험회사가 할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이 60%를 넘어야 한다. 미시시피주는 입법부가 정한 요율이 부과되기에 기준 손해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요율은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으로 구분되어 책정된다. 이들 종목 내에서 다시 사업유형, 보험 가입금액 감소 여부(고정²⁰⁾/체감), 피보험자 수(단생/연생)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가입금액이 일정한 경우보다 체감하는 경우 요율이 낮아진다. 피보험자 2명인 경우는 1명 대비 1.7~1.8배 요율을 부과한다.

한편, 주 보험감독청은 자신의 신용데이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요율을 적용할 경우 대출 실행 후 30일 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격성(insurability)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은 전쟁, 특정 기간 내 자살, 기왕증 등으로 제한되며, 가입 제한연령 도달 시 보험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적격성을 요구하거나, 최초 보험 가입금액이 \$15,000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의 90% 값을 보험요율로 적용한다.

3) 판매보수 규제

판매보수에 대한 규제 여부 및 한도 설정은 각 주의 선택 사항이다. 판매보수에는 판매수수료(commission)뿐만 아니라 가구, 집기·비품 지원 등 신용보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타 방식의 보상도 포함된다.²¹⁾ NAIC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총 보수한도를

19) NAIC 모델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등임(NAIC Model Regulation Services-January 2010). 이들 주는 개정 전 NAIC 모델법이나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규제함

20)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하게 고정될 경우 체감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최초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여 부채 규모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함

21) NAIC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의 Section 2.B(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Compensation"

보유보험료(net written premium)의 30%로 설정하였다.

일부 주에서는 전체 보험료 중 총보수가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최고 한도 40% 이상인 주는 미시시피(45%), 아칸소, 인디애나, 미주리, 사우스다코다, 테네시(40%) 등이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최고 한도를 규정한 주는 오클라호마(40%), 캘리포니아(생명: 27.5%, 장애: 23.75%), 인디애나(33%), 메릴랜드(32%), 네브래스카(30%), 워싱턴(25%), 메인(15%) 등이다. 뉴욕주는 대출기관이 실제 수행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텍사스주는 모든 보수 관련 비용 내역을 보험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주별 판매보수 규제에 대한 내용은 <부록 I>에 첨부하였다.

라. 주별 규제 및 감독

1) 뉴욕주

가) 법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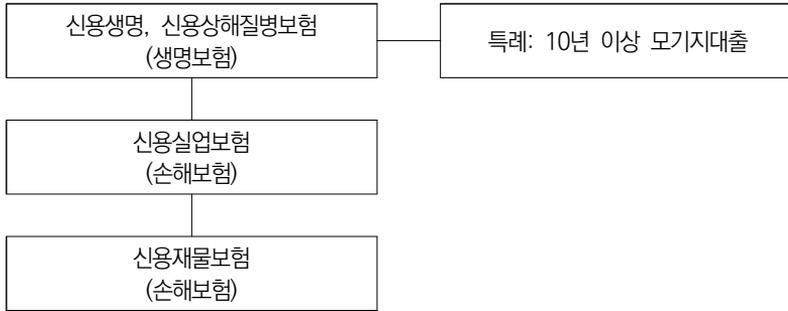
뉴욕주는 주보험법에서 신용보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²²⁾ 뉴욕주는 10년 이상 선순위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의 특별 규정²³⁾을 적용한다. 또한, 단체신용보험에 대한 정의로서 '채권자나 판매업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정한 수탁자(trustee) 또는 대리인에게 발행한 계약'이라고 규정한다(s.4216(b)(3)). 뉴욕주의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재물보험, 신용실업보험에 대한 규정은 <부록 II>에 첨부하였다.

means commissions, dividends, retrospective rate credits, service fees, expense allowances or reimbursements, gifts, furnishing of equipment, facilities, goods or services, or any other form of remuneration resulting directly from the sale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22)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 ISC § 4216. Group life insurance; premium requirements; notice of conversion; filing of compensation

23)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그림 II-1〉 뉴욕주 신용보험 규정 구분



나) 모기지대출 신용보험

뉴욕주는 10년 이상 모기지 신용생명보험(Mortgage Credit Life Insurance)의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선급, 재용자, 차압 또는 만기에 의한 모기지대출 종료
- 채무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 신용생명보험은 70세, 신용상해질병보험은 65세 도달
- 납입기일로부터 31일 내 보험료 미납
- 6개월 연체된 모기지 어음 지급
- 타 보험회사가 보장
- 단체계약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개인계약으로 전환
- 연생계약의 경우 연장자가 제한 연령 도달 시 보장 중지, 그러나 연소자에 대해서는 제한 연령 도달 시까지 보장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의 요율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강에 대한 특정 질문을 한 경우 보험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연령 제한, 양호한 건강상태에 대한 진술, 기왕증 면책 등은 허용한다.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보험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주한다. 최초 보험 가입금액 \$1,000에 대해 가입기간별·연령별(70세 보장한도) 월 보험요율은 〈표 II-8〉과 같

다. 연령별 보험료 수준은 32세 가입자의 경우 \$0.17(10년 만기)~\$0.26(35년 만기) 수준이며, 42세 가입자는 \$0.27(10년 만기)~\$0.63(35년 만기)이다.

〈표 II-8〉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단생)

(단위: \$1,000당/월)

가입연령	모기지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22세	0.11	0.13	0.15	0.17	0.19	0.19
27세	0.13	0.15	0.18	0.18	0.20	0.23
32세	0.17	0.18	0.21	0.22	0.25	0.26
37세	0.22	0.25	0.27	0.30	0.35	0.39
42세	0.27	0.34	0.42	0.50	0.57	0.63
47세	0.45	0.57	0.69	0.81	0.89	0.95
52세	0.73	0.91	1.11	1.25	1.34	1.39
57세	1.15	1.47	1.71	1.84	1.91	1.96
62세	1.91	2.29	2.47	2.57	2.63	2.66

주: 70세 보장 한도임

자료: 뉴욕주 보험법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위 표에 없는 다른 연령의 요율은 직선보간이나 외삽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연생계약의 요율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따른다.

- 연장자 단생요율의 140%
- 연장자 단생요율의 100% + 연소자 단생요율의 60%
- 기타 감독당국 승인 방식

평균보험료 부과 시 40세 이상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5세를 초과하는 연령그룹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최대 보험요율은 해당 그룹의 중앙연령이 된다.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월납일 경우 월납보험료 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분기납: 월납 × 3.00배
- 반기납: 월납 × 5.95배
- 연납: 월납 × 11.79배

보험요율 조정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이 72%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금에는 사고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금과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만약 3년 연속 보험금 지급률이 72%를 하회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신용상해질병 보험 요율산정 시 기준 손해율은 단생 70%, 연생 7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서비스 항목별 보수한도를 설정하였다(185.14 규정²⁴⁾. <표 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maximum percentage of prima facie written premium) 수준은 채무자 등록 5.00%, 보험금 청구 처리 0.25%, 일반관리 3.00%, 판매 1.50%이다.

〈표 II-9〉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규정

(기준: 가입금액 \$1,000당/월)

서비스 항목	보수 최대한도
채무자 등록	5.00%
보험금 청구 처리	0.25%
일반관리	3.00%
보험금 지급 처리	0.25%
전자기록 전송	1.00%
판매	1.50%

자료: 뉴욕주 보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다) 단체사업비 규제

① 규제

뉴욕주에서는 단체신용보험을 2인 이상 복수 채권자가 지정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행한 계약으로 명시하였다. 채권자가 지정한 수탁자위원회(trustee),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단체신용보험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수탁자위원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해당 단체계약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책무 및 의무

24)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Title 11. Insurance, Chapter VII. Credit and Creditor Insurance, 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 단체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자 유형 또는 해당 유형의 적격 조건
- 채권자 유형별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법
- 채권자·채무자 유형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 배당금·경험률 조정 방법
- 단체보험별 보험에 가입할 채무자의 유형
- 채무자의 각 유형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방법

대출금액을 분할상환하는 채무에 대해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기간은 3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commission)와 보수(fee)를 구분해야 한다. 단체신용생명, 단체신용상해·질병보험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채권자/판매업자가 지정한 수탁자는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지정될 수 없고,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은 수수료를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즉 수탁자와 공유할 수 없다.

보수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가에 대한 정당성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보험료 계산(computation of premium)
- 보험료 수금(collection of premiums)
- 증명서 발급(issuance of certificates)
- 보험료 환급(making refunds)
- 보험금 지급 처리(processing claims)

뉴욕주에서는 단체신용보험과 관련한 채권자의 서비스 또는 운영관리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서비스 항목별로 가입금액 \$1,000당 최대 부과할 수 있는 비용(월 기준)²⁵⁾은 <표 II-10>과 같다.²⁶⁾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 이하일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신용보험을 일체형(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으로 가입했을 경우 분리형보다 더 낮은 보수한도가 적용된다.

25) maximum per month per \$1,000 of insured indebtedness

26) 뉴욕주 보험법 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s.185.9 Commissions and fees or allowances

〈표 II-10〉 뉴욕주 단체신용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한도(대출기간 10년 미만)

(단위: \$1,000당/월)

구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분리형 (not packaged)	일체형 (packaged)	분리형 (not packaged)	일체형 (packaged)
채무자 등록	0.060	0.045	0.051	0.035
환불 처리	-	-	0.010	0.007
보험금 청구	0.035	0.025	0.005	0.005
일반관리	0.007	0.007	0.013	0.011
보험금 지급	0.035	0.025	0.005	0.005
전자기록 전송	0.010	0.010	0.010	0.010

자료: 뉴욕주 보험법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② 신탁 사례

뉴욕주에서 신탁(trust)을 통한 단체신용생명보험 영위 사례는 은행연합회(NYBA: New York Bankers Association)가 있다. 주에 소재하는 은행들이 신탁(NYBA Group Creditors Insurance Trust)을 설립해서 대출고객에게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한다. 은행이 신탁을 통해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면, 그 역할은 대리나 증개가 아니라 수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탁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수(service fee)를 부과할 수 있다.²⁷⁾ 이 수수료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행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의 개념과는 다르다. 적정 서비스 수수료 수준은 거래 규모 또는 보험료 대비 비중으로 표시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탁제도를 통해 회원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은행은 수수료 및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신탁은 단체보험 관련 마케팅 지원, 보험료 처리, 교육 및 운영 지원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신용보험을 제공(offering)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및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10년 간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11 million 수준이다.

27) 뉴욕주 보험법 s.185.9(c)

2) 캘리포니아주

가) 규정

캘리포니아주 역시 뉴욕주와 같이 주보험법에 신용생명 및 장해보험 관련 법규를 두고 대출 또는 그 밖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장해보험에 적용한다.²⁸⁾ 다만, 10년 이상 대출과 무료 보험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신용보험 종목에 대한 기준 손해율을 60%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보험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계약 비용, 사업경비, 이익, 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수준이다.

나) 신용보험 판매채널

캘리포니아주는 신용보험상품에 특화된 대리점(credit insurance agent) 규정을 두고 있다.²⁹⁾ 보험상품 판매자격을 9개로 분류하고, 이 중 세부 유형으로 신용보험 판매자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대리점 또는 중개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한다.

면허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신용보험 대리점 면허를 취득하면, 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신용재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해야 한다. 이들은 상환기간 10년 미만 부동산 또는 담보가치 6만 달러 미만 대출에 대한 보험계약을 취급한다. 대출 또는 신용연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판매를 유인해서는 안된다.

신용보험 대리점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신용보험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요건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증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28) Insurance Code, Division 1. General Rules Governing Insurance, Part 2. The Business of Insurance, Chapter 1. General Regulations, Article 5.9. Credit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29) State of California Insurance Act s.1758.97

마. 시장 현황

1) 실적

〈표 II-11〉은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된 신용보험(개인+단체, 만기 10년 미만)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가입 건수는 1975년 8만 건에서 2019년 1.3만 건으로 축소되었고, 동 기간 가입금액도 1,12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가입금액을 가입 건수로 나누어 산출한 1건당 가입금액 규모는 1975년 140만 달러에서 2019년 671.9만 달러로 높아졌다. 건당 가입금액 규모가 큰 것은 개인보험뿐만 아니라 단체보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기 10년 미만 신용보험시장의 절대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Durkin and Elliehausen 2017).

〈표 II-11〉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실적 추이(만기 10년 미만, 1975~2019년)

구분	건수(만 건)	가입금액(억 달러)	건당 가입금액(만 달러)
1975	8.0	1,120	140.0
1995	5.7	2,011	352.8
2000	5.0	2,008	401.5
2005	4.0	1,656	414.0
2010	2.3	1,118	486.1
2015	1.5	761	507.6
2018	1.4	835	596.7
2019	1.3	874	671.9

주: 1)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는 종목별 가입 건수, 가입금액 통계 발표 시 개인보험(Individual), 단체보험(Group), 신용보험(Credit)으로 구분함. 신용보험에는 만기(duration) 10년 미만 신용보험만 포함하며, 대출기간 10년 이상인 신용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각각 포함시킴

2) 2005년 이후 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실적을 포함함

자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20)

아울러 규제 변화도 미국 신용보험시장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통화감독청과 주 보험감독국 간 감독권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 1990년 연방대법원은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보험업무가 아닌 은행업무(두 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으로 간주)라고 판시하였다.³⁰⁾ 이에 통화감독청은 2002년 DCDS가 은행상품이므로 연방법에 의

한 감독을 받으며 이 서비스를 취급하는 국법은행에 대해 주 보험감독당국은 감독권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용보험시장은 DCDS 상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시장축소로 귀결되었다(송윤아·마지혜 2016).

〈표 II-12〉는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신용생명보험 보험료 규모 추이이다. 2018년 말 16.7억 달러이며, 신용생명(8.2억 달러)과 신용상해질병보험(8.5억 달러) 비중이 대략 비슷하다. 2015~2018년 전체 생명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4% 수준이다. 이는 신용생명보험이 틈새상품으로서 여전히 효용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보험료 규모

(단위: 억 달러, %)

구분	신용보험			생명보험 전체 (D)	신용보험 비중 (C/D)
	신용생명 (A)	신용상해질병 (B)	소계 (C = A + B)		
2015	9.2	9.1	18.3	6,810.8	0.27
2016	8.3	8.2	16.5	6,833.5	0.24
2017	8.1	8.3	16.4	6,913.8	0.24
2018	8.2	8.5	16.7	7,332.0	0.23
2015~2018년 평균	8.4	8.5	17.0	6,972.5	0.24

주: 1) 신용생명보험(A)는 단체 및 개인보험을 합산함

2) 신용상해질병보험(B)는 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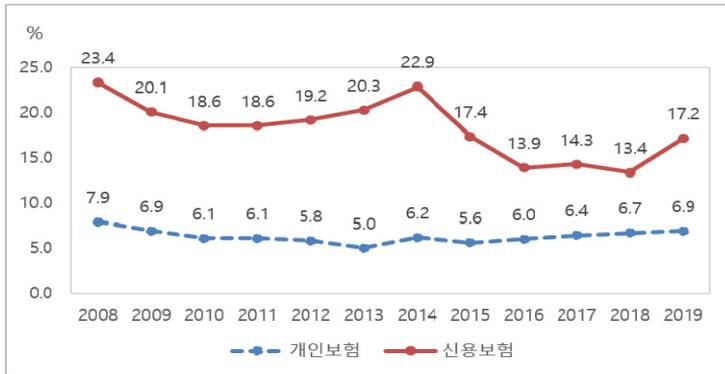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0)

2) 해지율

〈그림 II-2〉는 미국의 일반 개인보험과 신용보험 간 실효해지율(lapse and surrender rate)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신용보험이 개인보험보다 해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거래에 부수하여 가입하는 상품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자가 대출금액을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신용보험은 만기 전에 해지되며, 다른 조건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신용보험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게 된다.

30) 영국의 신용생명보험(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은 대출,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보장함(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0. 4)

〈그림 II-2〉 미국 신용보험 실효해지율 추이



자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2020)

3) 가입 현황

미국 미시건 대학의 가계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용보험 가입률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1977년과 1985년 조사에서는 할부구입 이용자의 신용보험 가입률이 60%를 초과하였으나, 2001년 이후 조사에서는 20%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가입률은 20% 미만이어서 할부구입 이용자보다 더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상품인 DCDS를 가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13〉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구분	할부구입 이용자					신용카드 이용자		
	1977	1985	2001	2012	2017	2001	2012	2017
가입	63.9	64.7	22.7	22.0	26.0	20.1	14.0	19.2
미가입	30.1	33.1	74.4	75.6	70.6	73.9	82.0	75.4
잘모름	6.0	2.2	2.9	2.4	3.4	6.0	4.0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신용보험 가입 동기가 자발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대출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 팔기에 의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입집단과 미가입집단으로 구분하여 권유 여부에 대한 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14〉와 같다. 가입자가 권유(추천) 또는 강권(요구)에

의한 비중은 1977년 72.4%(권유 33.1%, 강권 39.3%)에서 2017년 19.7%(권유 9.6%, 강권 10.1%)로 낮아졌다. 즉, 2017년에는 할부구입 이용자 중 신용보험에 가입한 26.0%의 19.7%만이 가입을 권유받거나 강권(요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권유 여부(할부 구입)

(단위: %)

구분	신용보험 가입자					신용보험 미가입자				
	1977	1985	2001	2012	2017	1977	1985	2001	2012	2017
제시안함	10.6	14.8	15.4	18.7	30.0	52.2	45.2	53.3	62.7	67.4
제시함	15.0	44.7	53.2	43.5	42.9	22.6	35.5	33.9	29.5	21.3
권유(추천)	33.1	16.4	12.2	17.6	9.6	17.0	12.9	4.1	0.5	1.6
강권(요구)	39.3	20.1	16.6	20.1	10.1	2.3	2.6	3.4	0.9	0.3
기타	2.1	3.9	2.6	-	7.4	5.9	3.9	5.3	6.5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표 II-15〉는 응답자의 신용보험 만족도 수준이다. 긍정적 비율(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은 2001년 93.4% 수준에서 2017년 72.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불만족 비율(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10% 미만이다. 신용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을 크게 상회하여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다.

〈표 II-15〉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만족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12	2017
매우 만족	27.8	38.2	29.6
어느 정도 만족	65.6	40.9	43.3
만족 소계	93.4	79.1	72.9
보통	3.9	20.9	17.5
불만족	2.7	-	4.7
매우 불만족	-	-	5.0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2. 캐나다

가. 감독 규정

캐나다에서도 차입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다.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에서는 신용 또는 대출보험(Credit or Loan Insurance)³¹⁾에 대해 실직, 심각한 질병, 사고 또는 사망 시 대출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²⁾ 이 상품은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또는 기타 대출이 승인될 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기관(은행, 신용조합, 모기지 중개인, 자동차 판매업자, 신용카드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독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용, 보장 및 급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특히 정기보험에 비해 연간 비용이 높다는 점을 예시하고, 연령, 건강, 성별, 상품 유형 및 대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옵션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보장이 시작되면 주 또는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20~30일의 검토 기간(free-look or trial)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캐나다 감독당국은 신용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구입하지 않을 경우 차별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대출기관은 적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캐나다 소재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행동 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자발적 규정이지만 각 은행에는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지정 담당자가 있고, 최고경영자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행동 강령에 따라 은행은 보험상품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이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신청 중인 상품이 보험상품이라는 사실
- 보험 관련 주요 용어 및 정의
- 보험상품 관련 모든 보수·비용(fees and charges)과 부담 방법

31) 캐나다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상품은 Creditor Insurance, Balance Protection Insurance, Balance Insurance, Debt Insurance로 불림

32)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insurance/credit-loan.html>

- 보장에 별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보험상품을 인수하는 원수보험회사 이름
- 보험 가입의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는 방법 및 시기
- 보장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 고객 취소 시 보험료 환불 기간
- 고객의 책무와 고객이 언제든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보장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약관
-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
- 보장범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나. 상품유형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기지대출 관련 보험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16>과 같이 생명보험(Mortgage Life Insurance)³³⁾과 손해보험(Mortgage Loan Insurance) 영역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보장 성격과 가입대상이 다르다. 대출금액은 주택 구입가격에서 최초 계약금액(down payment)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캐나다에서 주택 구입 시 계약금액이 20%를 하회할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모기지보험(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즉, 모기지보험³⁴⁾은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하회하는 주택 구입 시 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33) 모기지대출 관련 신용보험은 Mortgage Protection Life Insurance라고도 불림

34) 모기지보험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도 불림

〈표 II-16〉 캐나다 모기지대출 관련 보험상품

구분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Mortgage Life Insurance)	모기지보험 (Mortgage Loan Insurance)
신용보험 여부	신용생명보험 분류	손해보험 분류
보험금	차입자 사망 시 대출자(보험수익자)에게 모기지대출 잔액 상환	채무불이행자의 미상환부채가 담보가액 초과 시 대출자의 손실 보전
가입자	최초 계약금액이 20% 이상일 경우	최초 계약금액이 20% 미만일 경우 (즉, LTV 80% 초과 대출자)
의무 여부	선택 사항(보유 중인 다른 보험상품 활용, 주택 매각 후 상환 등 대안 존재)	대출기관 요구사항으로 선택권 없음 (20% 미만일 경우 의무)
보험요율	연령, 가입금액	연령, 가입금액 외 다른 요건 고려 (0.6~4.5%)
보험료 납입방식	일시납, 월납	일시납 또는 대출상환금액에 포함(보험료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자료: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mortgages>)

이에 비해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은 차입자가 사망할 경우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가입 여부가 선택사항이므로 Optional Mortgage Insurance Products라고도 불린다.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개인보험에 비해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언더라이팅이 단순하며,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여부도 선택 사항이다. 만약 다른 보험상품(예: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거나, 주택 매각 후 상환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할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잔여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유용한 상품이다.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모기지대출금액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액 상환 시 추가되어 납입된다. 연생형으로 가입하면 1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1명에 대한 보장은 지속된다. 또한,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도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중요한 언더라이팅 요인인 정기/종신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를 가격요인에 반영할 수 있는 일반 사망보험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 시장 현황

1) 가입률

캐나다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단독 가입도 존재한다. 2019년 기준 사망보험 가입자의 상품유형별 분포는 <표 II-17>과 같다. 전체 사망보장보험 가입자 중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만 보유한 비중이 각각 43%씩이며, 모기지 신용생명보험만 보유한 비중도 4%에 달한다. 사망보험 가입자 중 10%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모기지 신용생명보험만 보유한 비중이 5% 수준으로 남자보다 1%p 높다.

<표 II-17>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자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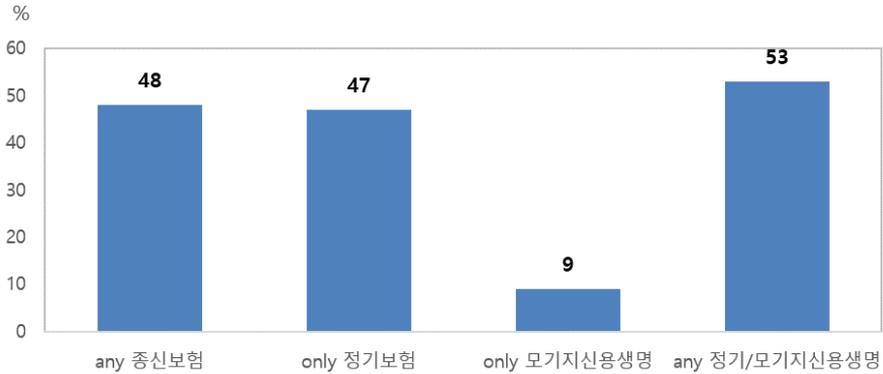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기혼(남)	기혼(여)
only 종신보험	43	41	45	43	45
only 정기보험	43	44	41	45	45
only 모기지 신용생명	4	4	5	4	4
종신 & 정기	10	11	9	9	6
계	100	100	100	101	100

자료: LIMRA(2020)

개인별 가입률은 종신보험만 가입한 비율이 48%이며, 정기보험만 가입한 비율도 47%여서 비슷한 수준이다.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만 가입한 비율도 9%에 달하며 정기보험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은 53% 수준이다.

〈그림 II-3〉 캐나다 개인별 사망보장보험 가입률(2019년)



자료: LIMRA(2020)

〈표 II-18〉은 캐나다 개인 기준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2019년 종신보험 가입금액(CAD100,000) 대비 정기보험 가입금액(CAD200,000)이 두배에 달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합산한 평균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CAD300,000 수준이다.

〈표 II-18〉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금액(2013년 vs. 2019년)

(단위: CAD)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 ¹⁾	2019	2013 ¹⁾	2019	2013 ¹⁾	2019
only 종신보험	88,000	100,000	110,000	120,000	71,500	100,000
only 정기보험	176,000	200,000	220,000	200,000	165,000	200,000
종신 + 정기	319,000	300,000	335,500	300,000	220,000	250,000

주: 1) 2019년 물가지수 조정된 가입금액 중위 값임

자료: LIMRA(2020)

2) 가입방식

캐나다에서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은 주로 대출기관을 통해 단체보험방식으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대출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번들방식 판매(Bundled sales of group credit life)라고 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모기지대출 한도 CAD500,000, 보험 가입 한도 CAD700,000 수준이며, 가입가능 연령은 18~65세, 계약

종료 연령은 65~70세로 설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anada Life가 제공하는 상품(Home Protector)의 보장유형은 사망 + 소득보상(DI: Disability Income) 또는 사망 + 치명적질병(CI: Critical Illness) 중 선택하도록 한다. 동일 대출에 대해 DI보험과 CI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DI보험의 소득보상은 월 CAD3,000 한도로 최대 24개월 지급한다. DI보험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동일 직장에 복귀하거나,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 지급을 중지한다. DI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자로 한정된다.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자영업자
- 출산, 육아휴직 중이지만 정규직 수행 가능자
- 계절적 취업자로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자

캐나다에는 비은행 모기지대출기관(예: First National, Home Trust)도 다수 존재하는데, Manulife는 이들이 판매한 모기지대출에 대한 신용생명보험을 인수한다. 자사 계열사인 Credit Security Insurance Agency Inc.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며, Broker Support Centre Inc.는 모기지대출기관에 데이터 처리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생명보험보험료는 모기지상환 계좌와 동일한 은행계좌를 통해 수급한다. 가입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60-Day Money-Back Guarantee)를 부여한다.

3) 보험요율

〈표 II-19〉는 캐나다 3개 은행(Scotiabank, Royal Bank of Canada, CIBC³⁵⁾)에서 판매하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최대보장한도: CAD750,000, 70세 보장) 상품의 단체계약 요율을 비교한 것이다. 5세 단위로 요율을 부과하며, 31~35세 가입 시 가입금액 CAD1,000당 보험료 수준은 CAD0.13~CAD0.15 수준이다. 연생요율은 단생보다 1.7배 정도 높게 부과한다.

35)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표 II-19〉 캐나다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단위: CAD)

연령계층	Scotiabank	Royal Bank of Canada		CIBC	
	단생	단생	연생	단생	연생
18~30세	0.11	0.09	0.15	0.09	0.15
31~35세	0.15	0.13	0.22	0.13	0.22
36~40세	0.22	0.20	0.34	0.20	0.34
41~45세	0.33	0.29	0.49	0.29	0.49
46~50세	0.44	0.40	0.68	0.43	0.68
51~55세	0.55	0.52	0.88	0.64	0.90
56~60세	0.74	0.70	1.19	0.82	1.19
61~65세	1.09	0.95	1.62	0.97	1.62
66~69세	1.54	1.63	2.77	0.97	1.62

자료: 각 사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20〉은 Canada Life의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을 나타낸 것이다.³⁶⁾ 최대보장한도는 CAD500,000, 65세 보장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연생요율이 단생의 1.4배 정도 수준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하여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30~34세 가입 시 가입금액 CAD1,000당 보험료(단생) 수준은 흡연자 CAD0.14인 데 반해 비흡연자는 CAD0.07 수준이다.

〈표 II-20〉 Canada Life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단위: CAD)

연령계층	흡연자			비흡연자		
	단생(A)	연생(B)	B/A	단생(A)	연생(B)	B/A
30세 미만	0.11	0.15	1.36	0.05	0.07	1.40
30~34세	0.14	0.20	1.43	0.07	0.10	1.43
35~39세	0.24	0.34	1.42	0.11	0.15	1.36
40~44세	0.38	0.53	1.39	0.18	0.25	1.39
45~49세	0.60	0.84	1.40	0.29	0.41	1.41
50~54세	0.88	1.23	1.40	0.43	0.60	1.40
55~59세	1.12	1.57	1.40	0.54	0.76	1.41
60~64세	1.34	1.88	1.40	0.63	0.88	1.40

자료: 각 사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36) Canada Life가 인수하는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Bank of Montreal, The Canada Life Assurance Company, CIBC, Duo Bank of Canada, I. G. Wealth Management, Royal Bank of Canada 등임

3. 일본

가. 연혁

일본의 신용보험시장은 은행, 신용보증기관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계약 중심이다. 1960년대 치오다생명(千代田生命)이 자동차 대출에 대해 단체정기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1966년부터 많은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을 독자적인 명칭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주택 취득이나 주택 건축용 토지 취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이지연 2018. 7).

일본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 장애가 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된 생명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방식은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단체신용생명보험(또는 여타 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단체계약 방식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리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차입자 납부금액 = 대출원금 + 이자 + 보험료)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나 외연상 보험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특약 보험 가입방식을 선택하면, 매년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간경과에 따라 대출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감소하게 된다.

나. 시장 규모

〈표 II-21〉은 2012~2018년 생명보험 시장 내 전체 단체계약 중 신용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신계약금액 중 단체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3.3%에 머물렀으나, 2018년에는 45.7%로 증가하였다.³⁷⁾ 보유계약 기준 단체신용보험의 비중은 2012년 46.1%에서 2018년 48.4%로 높아졌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유계약금액 규모는 2012년 170.6조 엔에서 2018년 189.5조 엔으로 증가하였다.³⁸⁾

37) 2018년 기준 단체신계약금액의 보험종목별 구성은 단체신용생명보험(2조 1,547억 엔, 구성비 45.7%)이 가장 높고,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1조 6,852억 엔, 35.7%), 단체정기보험(8,796억 엔, 18.6%) 순임

38) 2018년 기준 단체보유계약금액의 보험종목별 구성은 단체신용생명보험(189조 4,872억 엔, 구성비 48.4%), 단체정기보험(110조 1,595억 엔, 28.1%),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91조 5,341억 엔, 23.4%) 순임

〈표 II-21〉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금액 추이

(단위: 조 엔, %)

구분	신계약		보유계약	
	가입금액	비중	가입금액	비중
2012	0.71	23.3	170.6	46.1
2013	0.97	21.5	172.3	46.4
2014	0.97	31.8	174.1	46.7
2015	1.73	44.6	176.5	47.0
2016	0.97	31.8	180.4	47.6
2017	1.63	33.0	184.7	48.1
2018	2.15	45.7	189.5	48.4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각 호

다. 민간 금융기관

1) 개요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은 〈표 II-22〉와 같다. 기본형은 차입자의 사망 또는 고도장해 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장해 보험금으로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고도장해 보장은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한 고도휴유장해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장해 상태가 되어 채무변제가 곤란해질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최고 한도는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표 II-22〉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구분	단체신용생명보험	3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7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보험료	금융기관 이용 시 대출금리에 보험료 포함	주택담보대출금리 + 0.3% 정도	연령, 대출잔액, 대출내용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담
보장내용	사망 또는 고도장해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경변

자료: 이지연(2018. 7)

기본형에 특정 질병을 추가하여 보장하는 방식도 있다. 3대 질병보험 부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차입자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에 걸려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보장대상 질병을 7대 질병(3대 질병 +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경변)이나 8대 질병으로 확장한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보험료는 주택담보대출에 가산(예: 주택담보대출금리 + 0.3%)하는 방식으로 부가한다. 단체신용생명보험 역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의무가 부과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일부 민영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모기지담보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³⁹⁾

2) 사례

〈표 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영은행인 Tokyo Star Bank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3년, 5년, 10년)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차입자는 25~65세 연령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 연령은 75세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은 가계기준 600만 엔, 1인가구 기준 400만 엔이며, 대출기간은 1~35년이다. Tokyo Star Bank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증회사나 제3자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연대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추천하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야만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Tokyo Star Bank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표준형 보험 가입이 거절된 차입자를 대상으로 비표준체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다.

〈표 II-23〉 Tokyo Star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상품유형	보장내용
기본형 + 입원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영구장해, 잔여생존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대출금 변제 질병 입원 시 최대 6개월 대출금 변제(총보장기간 36개월)
기본형 + 입원 + 암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보장 추가
비표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형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가입이 거절된 차입자 대상

자료: https://www.tokyostarbank.co.jp/products/loan/homeloan_starone/pdf/outline_en.pdf에서 저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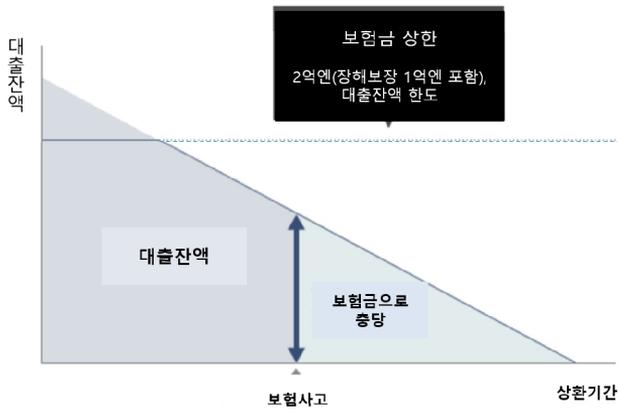
39) 모기지담보대출 안내사이트(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계열사인 SMBC Trust Bank⁴⁰⁾는 Tokyo Star Bank와 달리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해야만 대출자격을 부여한다. 대출신청자는 20세 이상이며, 80세 도달 전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연소득 500만 엔 이상이라는 소득조건이 있으며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1~35년이며 1년 변동금리 상품이다.

또 다른 단체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하는 사례는 미쓰이스미토모해상아이오아생명보험주식회사(三井住友海上あいおい生命保険株式會社)이다. 동사는 대출금액 5천만 엔을 기준으로 가입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대출금액이 5천만 엔 이하일 경우 의사진단과 병원진단서 없이 청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 보험 가입 한도는 2억 엔(장해보장 1억 엔 포함)이다.

단체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SMBC Trust Bank에서 부담하며 보험금 청구 수속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고보험금은 SMBC Trust Bank에게 지급하는데,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내 자살할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는 <그림 II-4>와 같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비례하여 축소된다.

<그림 II-4> SMBC Trust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자료: SMBC Trust Bank 상품설명서 자료(<https://www.smbctb.co.jp/en/product/loan/>)

40) 1986년 설립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100% 자회사로서 2013년 SMBC 신탁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 신탁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운용, 관리, 보전 등 프라이빗 뱅킹업무에 주력하며, 종업원 수는 2,112명임

라. 공적 금융기관

1) 장기고정형 모기지대출

일본에서는 장기고정형 모기지대출업무를 주관하는 공적기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한다. 일본주택금융공사(Japan Housing Finance Agency)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공적기구이다.⁴¹⁾ 이 기구는 민영 금융회사와 달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특화되어 있다. ‘플랫(flat)35’는 전국 300개 이상 민영기관이 주택금융지원기구와 협력하여 취급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전기간(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 대출이다.⁴²⁾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민영은행, 지역신용조합, 특정 기업의 사용자이다. 대출금리는 차입자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시점의 연령, 차입자의 건강상태 및 담보자산 평가금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35년, 신청가능 연령은 20~69세, 전부상환 연령은 75~80세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을 실행한 민영 금융회사로부터 고정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증한다. 주택금융공사 사업분야는 9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이다.

2) 판매방식

일본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권유한다. 대출고객을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인수 대상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주택금융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활용하여 대출고객의 잔여 대출금을 변제한다. 2020년 4월 1일 기준 16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인수회사로 참여하며 지역별로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심사는 간사사로 지정된 생명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⁴³⁾

41) 이전 기구는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임

42) 플랫35 웹사이트(<https://www.flat35.com/index.html>)

43) 일본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https://www.jhf.go.jp/loan/yushi/danshin/chiikikanji.html>)

2019년 기준 ‘플랫 35’를 이용한 가구 수는 110만 가구⁴⁴⁾이며 대출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선택 사항이다. 차입자가 건강상 이유 또는 기타 사정으로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⁴⁵⁾ 공사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한다.⁴⁶⁾ 그 이유는 상환 불능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역시 차입자 사망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담보자산을 압류하여 매각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림 II-5〉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신용생명보험 구조



자료: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신용생명보험 안내자료(<https://www.jhf.go.jp/loan/yushi/danshin/shin-danshin/index.html>)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금융공사(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며, 차입자(채무자)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이다. 상품유형은 2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사망과 고도장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만 80세 생일이 속하는 말일까지 보장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만 70세까지 가능하다. 연대 채무자인 부부가 연생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3대 질병 보장부 단체신용생명보험은 기본형의 보장에 추가하여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및 공적장기간병보험의 개호상태를 보장한다. 3대 질병 보장부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만 51세 미만이며, 보장시점은 만 75세 생일이 속한 말일까지이다. 만 7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본형 보장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44) 일본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https://www.jhf.go.jp/about/organization/message.html>)

45)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는 동일함

46) 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

- 대출 신청 시 청약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 가입 신청 기한은 모기지대출 계약 수속 시점까지이며, 모기지 상환 도중에 가입할 수 없음(건강상태 고지와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 비용 및 검사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대출금액 5,000만 엔 초과 차입자가 3대 질병 보장부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검진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보험 가입금액 상한은 1억 엔으로 제한함
- 보험료는 매월 대출 상환금에 포함하여 납부함
- 보험료는 고객의 모기지대출 잔액에 따라 매년 납부함
-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탈퇴 처리하고, 이후 재가입이 불허함
-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 아님

〈표 II-24〉는 차입자가 선택한 단체신용생명보험 유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리 수준이다. 2017년 10월부터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험요율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켰는데, 단생의 경우 대출금리에 보험요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타 급부 부가 시 (대출금리 + α)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부 연생, 3대 질병 부가 시 각각 0.18%, 0.24%를 추가한다.

〈표 II-24〉 일본 '플랫35' 단체신용생명보험 유형별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단생)	플랫35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부부 연생)	플랫35 대출금리 + 0.18%
3대 질병 부가형 단체신용생명보험	플랫35 대출금리 + 0.24%

자료: '플랫35' 안내자료(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SUB13)에서 저자가 작성함

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가. 규제

1) 상품허가

국내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영업규제를 위한 시행령 별표에 표시되어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II장에서 살펴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면, 사망을 담보하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규정만 있고, 피보험자의 상해/질병/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상품(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실업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감독규정상 신용손해보험은 상해사망을 보장하므로 신용생명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손해보험 영역에 속하는 신용재물보험에 대한 정의는 찾기 어렵다.

한편, 신용보험상품개발 관련 법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방카슈랑스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제한을 두고 있다. 기초서류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검증 및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며, 신고상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신계약비를 일반 채널 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보장이더라도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채널에 비해 더 낮다.

2) 판매규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 위험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간주하여 은행 창구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첫째, 대출과 보험 가입 창구를 분리하여야 하며, 판매인력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한다.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로 인해 대출담당 직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설명과 권유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꺼리게 된다. 대출고객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에도 대출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험창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방카슈랑스 규제에 의해 아웃바운드(out bound) 영업을 금지하므로 은행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in bound) 영업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출고객에 대한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우편판매(Direct Mail)는 불가하고, 대출 관련 사이트와 연계한 영업·마케팅도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대출 전·후 1개월 내 구속성 보험에 대한 규제이다.⁴⁷⁾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판매가 전면 제한되고, 일반차주(신용등급 1~6등급)에 대해서는 대출금액 대비 보험료 1% 내에서 허용된다. 2021년 3월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법」 관련 행정규정에서는 금융업권 간 ‘끼기 간주행위’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하였다.⁴⁸⁾ 개정안에서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구속성 보험 규제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는데, 취약차주 및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금지하며, 그 밖의 차주에 대해서는 1% 초과 보험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한 신용생명보험은 일반차주에 국한하여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1%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47) 2018년 7월 30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속성 보험의 예외로 처리할 것을 제안함

4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표 Ⅲ-1〉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 규제 개선

구분		은행법·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적용)
기존	판매금지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일부 투자상품 (펀드, 신탁 등)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
	1% ¹⁾ 까지 허용	[차주] 취약차주 [상품]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차주] 일반차주 [상품] 보험
구분	판매제한 금융상품	취약차주/피성년· 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	그 밖의 차주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개인에 한정)
개정 (2021. 3 이후)	보장성	금지	1% 초과 금지
	일부 투자성(펀드/ 금전신탁 등)	금지	1% 초과 금지(신설)
	예금성	1% 초과 금지	규제 없음

주: 1)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차주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월납입액/대출금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아울러 2021년 3월 25일 고시된⁴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면서도 "신용생명보험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생명보험상품이 대출과 연계된 특수성을 인정해 주었다.⁵⁰⁾ 이에 따라 대출금융기관들이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 시장현황

1) 신용보험 연혁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늦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주택은행과 한국생명

4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6항 제2호

의 업무제휴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신용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2003년 8월 도입) 시 허용된 상품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창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6년 3월 신용생명보험상품(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신용보험)을 출시하고, 방카슈랑스 채널(IBK기업은행, 아주저축은행)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30~55세, 보험기간은 1~15년, 가입금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1,000만 원~10억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망보장형 가입금액 5천만 원, 10년 만기 전기납에 대한 40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남성 10,500원, 여성 6,000원 수준이다.⁵¹⁾ 그러나 이 상품은 개인 신용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자 출시 1년 6개월만인 2017년 9월 판매 중단되었다.⁵²⁾

2021년 1월 기준 외자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은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로 설립되어 200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다. 감독당국이 단체계약 판매은행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외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확대를 도모해왔다. 판매 채널을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확장하고, 은행·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방카슈랑스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다.⁵³⁾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은 자동차할부금에 대해 잔여할부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공제상품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⁵⁴⁾ 보장대상이 금전소비대차에 한정되므로 가입기간은 10년 이하, 보험 가입금액 1천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2) 판매상품

가) 신용생명보험

여기서는 국내 특정사가 방카슈랑스(모바일) 방식으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을 살펴본다. 방카슈랑스 상품은 주계약 + 특약의 형태가 아니

51) 메트라이프생명 홈페이지(<https://www.metlife.co.kr/about-us/about-metlife/newsroom/newsroom-20160216/>)

52) 비즈니스위치(2018. 6. 7), “신용생명보험 속살이 ① “겪기 아깝니다”

53)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바일 신용대출 고객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뱅킹앱 ‘하나원큐’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SC제일은행의 모바일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음

54) 상품 명칭은 ‘어부바신협대출상환보장공제’임

라, 패키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가입자는 일체형인 아래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 기본형: 사망 + 고도장해(80% 이상 장해)
- 암보장형: 기본형(사망, 고도장해) + 암보장
- 3대 질병보장형: 기본형(사망, 고도장해) +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가입자는 사망(고도장해)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암이나 3대 질병보장을 추가하는데, 3대 질병보장형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신용생명보험상품 보장내용 예시

(기준: 3대 질병보장형, 비갱신형, 보험 가입금액 1억 원)

보장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억 원 1년 이내: 5천만 원
뇌출혈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억 원 1년 이내: 5천만 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2천만 원 1년 이내: 1천만 원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3〉은 ‘기본형’ 보장에 대한 월납 보험료(가입금액 1억 원, 비갱신형) 예시표이다. 35세 피보험자가 30년 만기(대출금 65세 상환 종료) 상품 가입 시의 월 보험료 규모는 21,300원(남자), 10,000원(여자)이다. 35세 청년층의 경우 연간 대출금액의 12bp(여자)~25.56bp(남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망(고도장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구입 수요가 많은 40세의 경우 30년 만기(대출금 70세 상환 종료) 상품을 선택하면, 부담해야 하는 월납 보험료 규모는 33,000원(남자), 14,700원(여자) 수준이다.

〈표 III-3〉 신용생명보험상품 보험료 예시

(기준: 기본형, 보험 가입금액 1억 원, 전기납, 월납, 원)

구분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5세	8,500	5,000	12,800	6,800	21,300	10,000
40세	12,400	6,800	19,800	9,500	33,000	14,700
45세	19,500	9,700	31,200	13,800	53,700	24,200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4〉는 남자 40세가 10년 만기, 기본형으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예시표이다. 5년 경과 후 해지하면 환급률(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은 13.4% 수준이며, 만기인 10년이 도래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순수보장형상품이므로 이 시점에서 환급금은 ‘0’이 된다.

〈표 III-4〉 신용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비갱신형, 기본형, 남자 40세, 10년 만기, 가입금액 1억 원, 월납,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1년	148,800	-	0.0%
3년	446,400	41,500	9.3%
5년	744,000	99,600	13.4%
10년	1,488,000	-	0.0%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나) 신용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은 자동차할부업체와 제휴형 상품으로 ‘행복두배대출상환보험’⁵⁵⁾을 제공한다. 제휴한 르노캐피탈은 할부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사망하거나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수령한 보험금으로 잔여대출금을 변제받고, 차량 전손사고 시 신차 가액 및 차량등록비를 지원한다. 이 상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전부보험으로 가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할부 이용과 동시에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된다.⁵⁶⁾

3)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시장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시장 형성이 매우 미흡하여 감독당국이나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누적 판매 건수(청약거절 제외)는 5,466건이다. 이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27.1%(1,483건), GA 판매⁵⁷⁾ 비중은 72.9%(3,983건)를 차지한다.

한편, 2019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4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단체계약(1억 원)과 개인계약(3억 8천만 원) 간 비중은 각각 21.2%, 78.8%로 개인계약 중심으로 판매되었다.

다.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상품 실패 사례

1) 감독조치

우리나라 신용보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최초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은 미흡하다. 신용생명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는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기준 가입자 150만 명, 연간 수수료 1천억 원에 달해 대조된 모습을 보인다.

55) 할부금융서비스는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보험서비스는 제휴 보험대리점(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을 통해 제공함

56) 르노캐피탈 홈페이지(<https://dev.renaultcapital.co.kr/mobile/prod/service/pay/view.rci>)

57) 정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됨

2005년 1월부터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선진금융의 일환으로 DCDS를 판매하였다. 상품의 본질적 기능은 신용생명보험이었으나, 당시 이 상품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⁵⁸⁾ 이에 따라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설계, 수수료율, 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되었다(송운아·마지혜 2016).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설계하였다.

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되자 감독당국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2015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⁵⁹⁾ 첫째,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 명(약 281억 원) 중 52만 명에 대해 환급(173억 원)조치하였다. 이 상품은 카드회사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유료 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신용카드사에게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 제외사항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DCDS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수료 구성요소⁶⁰⁾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보장내용

신용카드회사의 DCDS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신용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III-5>는 2016년 이후 특정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DCDS 상품의 보장내용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상품수수료는 '카드채무액 × 상품수수료율(0.30%)'로 산정된다. 1형은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상해 발생 시 채무를 면제하며, 단기입원 시에는 채무를 유예한다. 2형은 사망, 치명적 질병, 중대장애에 대해 채무면제하며, 장기입원 시 100만 원 한도로 채무를 부분면제한다. 이 밖에도 실업보장형에서는

58) 이석호(2008)

5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7),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8개 전업카드사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항 개선 추진"

60) 계약책임보상보험(CLIP) 보험료 + 전화통신판매비용 + 운영비(인건비) + 목표이익

비자발적 단기실업, 비자발적 장기실업 시 결제금액 상황을 유예하거나 채무액을 면제한다. 보장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및 신용실업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5) 신용카드사 DCDS 상품 보장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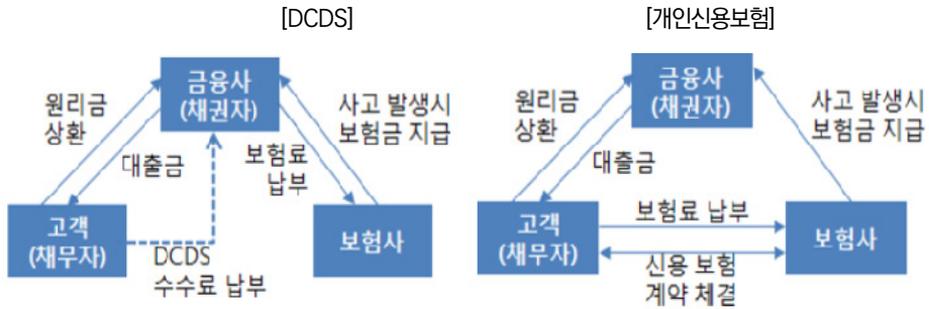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1형	채무면제	사망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시, 보장채무액을 면제
		치명적 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으로 진단 받거나, 주요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치명적 상해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채무유예	단기입원	보장신청일 이전 45일 동안, 1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장 12개월간 결제금액 상황을 유예
2형	채무면제	사망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시, 보장채무액을 면제
		치명적 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으로 진단 받거나, 주요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중대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3급 장애인이 될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 면제
	채무부분면제	장기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 면제(보장한도 100만 원)

자료: 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유예상품 공시(<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etail22?cgcMode=22#>)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3) 상품구조

〈그림 III-1〉은 DCDS와 개인신용보험상품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계약책임 보상보험(CLIP: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채무면제나 유예로 인한 위험을 손해보험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DCDS는 ‘금융사(채권자)와 고객(채무자) 간의 계약’과 ‘금융사와 보험사 간의 계약’으로 고객과 보험사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에 비해 개인신용보험은 고객과 보험사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그림 III-1〉 DCDS와 개인신용보험 구조 비교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표 III-6〉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DCDS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2016년 8월 신규 DCDS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CDS 시장 규모는 2015년을 정점으로 2016년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회원 수는 2015년 332.3만 명이었으나 2020년 6월 말에는 151.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수료 산정기준인 총채무액도 동 기간 약 66.7조 원에서 18.1조 원으로 하락하였다. 2020년 6월 말 기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620억 원, 계약책임보상보험(CLIP) 보험료 규모는 138억 원,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은 109억 원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율은 0.35% 수준이며, 1인당 수수료 금액은 연간 8만 원 수준이다.

DCDS는 불완전판매 문제 외에도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5년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전체 수수료 수입 중 계약책임보상보험(CLIP)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2%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사의 DCDS 판매수익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CLIP 보험료와 판매비용(텔레마케팅)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대략 60%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CLIP보험료 대비 보상금인 손해율은 70~83%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AIC에서 기준으로 정한 손해율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 III-6〉 DCDS 수수료 수입 및 보상금 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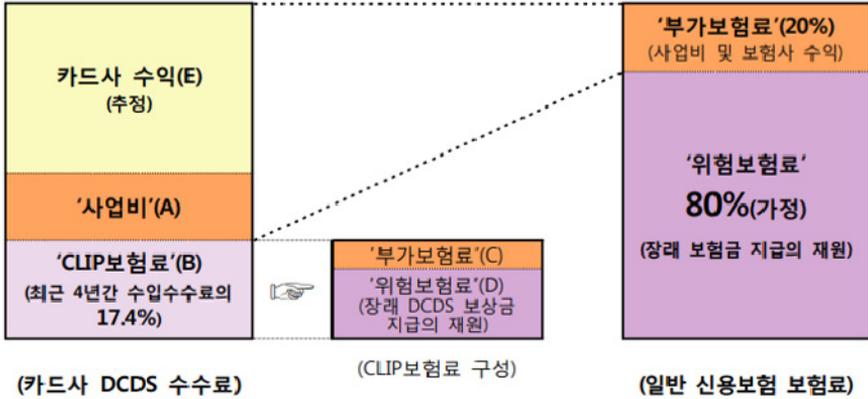
구분	회원 수 (만 명)	총채무액	수수료 수입	CLIP 보험료	보상금	1인당 채무	1인당 수수료 (만 원)
	A	B	C	D	E	B/A	D/B
2015	332.3	666,747	2,580	394	276	0.201	7.76
2016	270.4	567,283	1,956	328	273	0.210	7.23
2017	225.0	510,729	1,797	320	266	0.227	7.99
2018	193.5	460,255	1,622	331	244	0.238	8.38
2019	168.2	402,943	1,389	302	236	0.240	8.26
2020. 6	151.8	180,851	620	138	109	0.119	4.08

구분	수수료율	수수료수입 - CLIP 보험료	보험사 수입	손해율	보상금/ 수수료수입	보험료 비중
	C/B	C - D	D - E	E/D	E/C	D/C
2015	0.387	2,186	118	70.1	10.7	15.3
2016	0.345	1,628	54	83.4	14.0	16.8
2017	0.352	1,478	54	83.1	14.8	17.8
2018	0.352	1,291	87	73.8	15.1	20.4
2019	0.345	1,087	65	78.3	17.0	21.7
2020. 6	0.343	482	30	78.5	17.5	22.3

자료: 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유예상품 공시(<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etail22?cgMode=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 대비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비중은 20% 미만이다. 일반적인 가계성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자원(2015. 12)에서도 DCDS 수수료에서 보상금 지급재원이 되는 CLIP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DCDS 수수료와 신용보험 보험료 체계 비교



자료: 한국소비자원(2015. 12)

송윤아·마지혜(2016) 역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DCDS 수수료 수익은 DCDS 상품과 대체상품(예: 신용보험) 간 규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즉,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보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반사이익을 얻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2. 잠재수요

가. 가계부채

1) 총량

신용보험에 대한 잠재수요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3/4분기 말 가계신용은 1,682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94.3%인 1,586조 원은 가계

대출이며, 판매신용은 5.7%인 97조 원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1.1%로 가계신용 규모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게 되었다. 2020년 3/4분기 말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과 생계자금 및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세 확대에 기인한다(한국은행 20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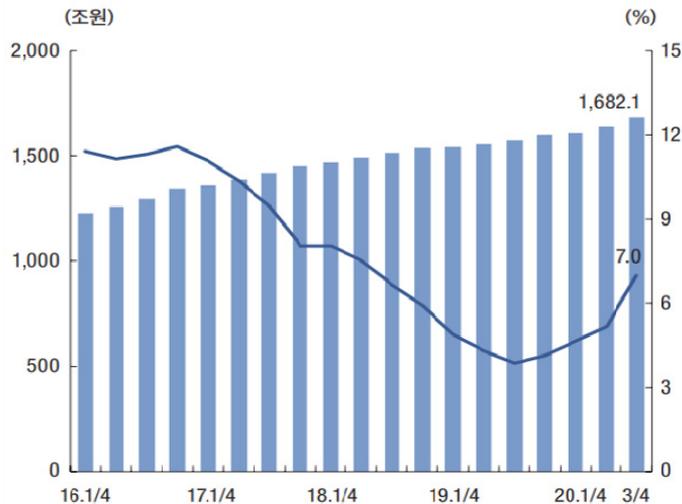
〈표 Ⅲ-7〉 가계신용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규모			구성		
	가계신용 (A + 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가계신용 (A + 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2017	1,451	1,370	81	100.0	94.4	5.6
2018	1,537	1,447	90	100.0	94.1	5.9
2019	1,600	1,505	96	100.0	94.0	6.0
2020. 3Q	1,682	1,586	97	100.0	94.3	5.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1. 24),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Ⅲ-3〉 가계신용 규모 추이 및 증가율



주: 좌축은 잔액, 우축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2020. 12)

2) 업권별·유형별 규모

〈표 Ⅲ-8〉는 2020년 3/4분기 말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규모 및 비중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71.8%가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⁶¹⁾)을 통해 실행되었고, 기타 금융기관 비중은 28.2%이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56.2%인 89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20~30대 등 청년층의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Ⅲ-8〉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규모(2020. 3/4분기)

(단위: 조 원, %)

금융업권·대출유형		잔액	비중
가계대출		1,586	100.0
(A + B)	주택담보대출	890	56.2
	기타대출	695	43.8
예금취급기관		1,138	71.8
(A)	예금은행	821	51.8
	주택담보대출	567	35.7
	기타대출	254	16.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17	20.0
	주택담보대출	95	6.0
	기타대출	222	14.0
기타금융기관 등		447	28.2
(B)	주택담보대출	229	14.4
	기타대출	219	13.8
주택담보대출		890	100.0
(C + D)	예금취급기관(C)	662	74.3
	예금은행	567	63.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5	10.7
	기타금융기관 등(D)	229	25.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1. 24),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저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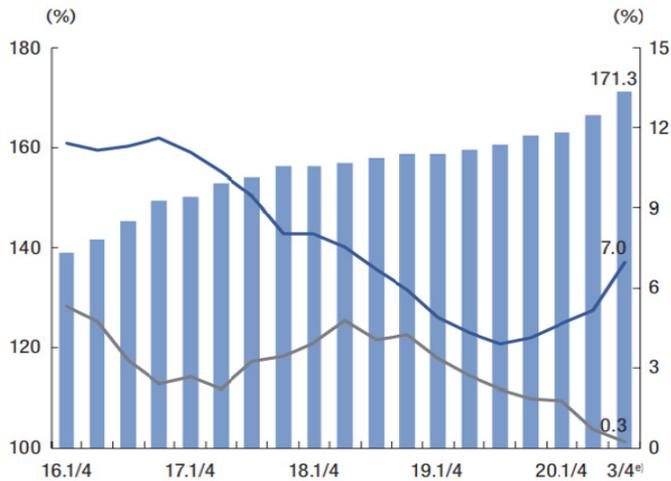
6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잔액(1,586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24.9%(20대 4.2%, 30대 20.7%)에서 2020년 3/4분기 말에는 25.8%(20대 4.9%, 30대 20.9%)로 상승하였다. 2020년 3/4분기 말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은 26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는데, 증가금액의 85.1%는 전세자금대출이다. 또한, 기타 대출 역시 금리 하락,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은 예금은행 63.6%(567조 원), 기타금융기관 등⁶²⁾ 25.7%(229조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7%(95조 원) 순이다(한국은행 2020).

3)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림 III-4〉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2020년 3/4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3%로 크게 높아졌다. 그 이유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III-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주: 1) 좌축 막대그래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축 위 선그래프는 가계부채 증가율, 우축 아래 선그래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의미함

2)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한국은행(20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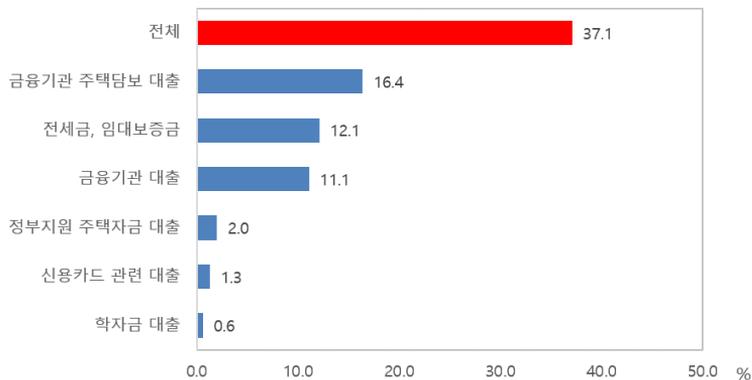
62)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한편, 취약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다. 취약차주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계층에 속하는 차입자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82.1조 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0.22% 수준이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73%로 은행대출 대비 7.9배 높다.

나. 부채보유 가구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의 부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율이 37.1%(2018년 기준)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16.4%로 가장 높고, 전세금/임대보증금 대출 12.1%, 금융기관대출 11.1%,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2.0%, 신용카드대출 1.3%, 학자금대출 0.6% 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30.5%,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18.4%로 추정된다.

〈그림 III-5〉 부채유형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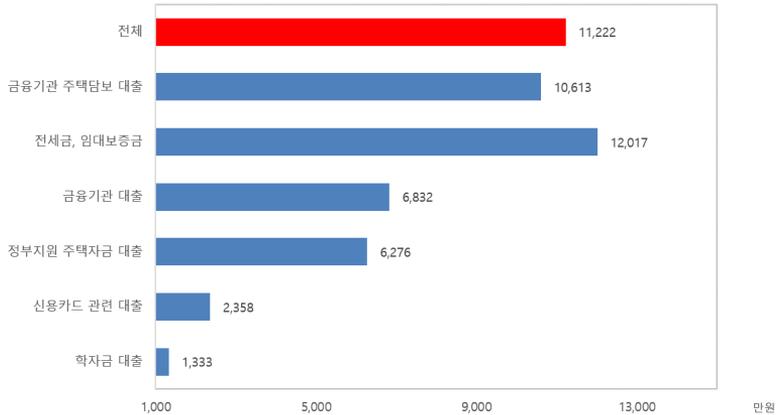
주: 1) 표본가구 수는 4,770개임

2) 표본가구 대비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1차 가구 분석

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평균 1억 1,222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유형별로 보면, 전세금/임대보증금이 1억 2,017만 원으로 가장 크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1억 613만 원, 금융기관 대출 6,832만 원,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6,276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2,358만 원, 학자금대출 1,333만 원 순이다.

〈그림 III-6〉 부채보유 가구당 부채금액(2018년)



주: 1) 표본가구 수는 4,770개임
 2) 표본가구 대비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1차 가구 분석

3. 발전방안

가. 활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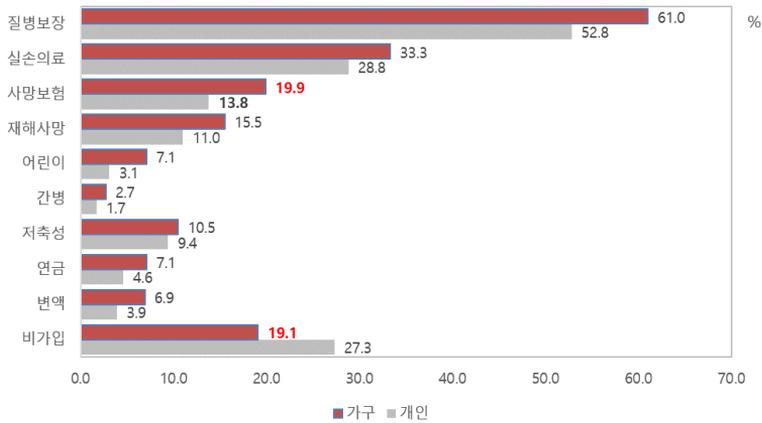
1) 보장보험 가입률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가장 유고 시 부채상환에 대한 압박이 높기 때문에 인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망/질병/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연구원(2019)의 조사⁶³⁾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63) 조사대상은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유효표본은 총 2,464명임. 조사기간은 2019. 6. 3~7. 22 (약 7주), 조사기관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임

사망보장보험 가입률과 재해사망보험 가입률은 각각 19.9%, 15.5%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종신 48%, 정기 47%, 모기지 신용생명 9%, 정기 또는 모기지 신용생명 53%)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I-7〉 보험종목별 가입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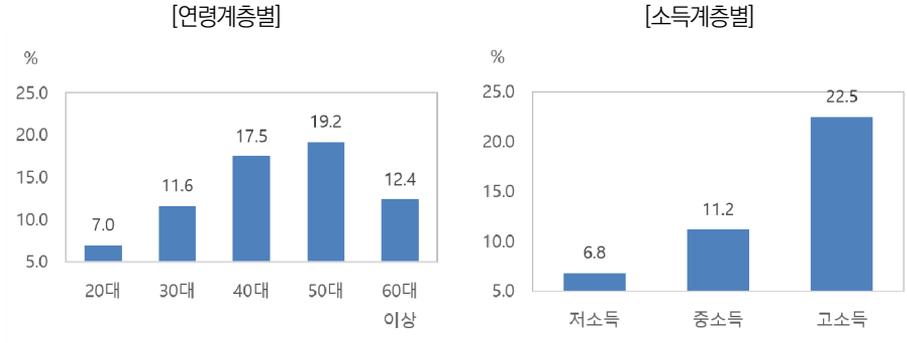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9)

개인의 연령계층별 사망보험 가입률은 20대 7.0%, 30대 11.6%, 40대 17.5%, 50대 19.2%, 60대 이상 12.4%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30대의 사망보험 가입률은 11.6%에 불과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6.8%, 중소득 11.2%, 고소득 22.5%로 조사되어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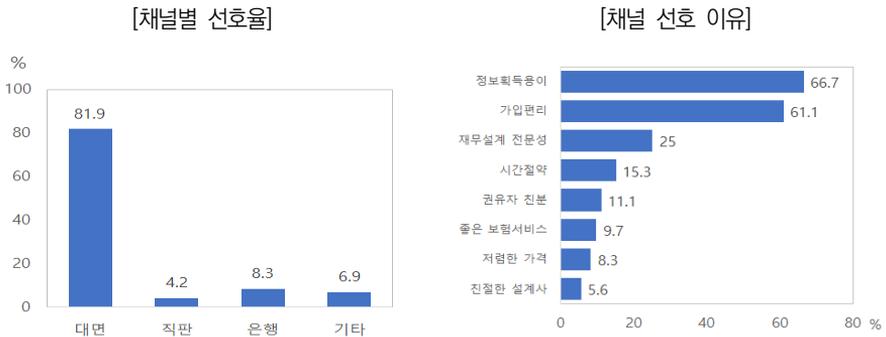
한편, 사망보험 가입 시 선호하는 채널은 대면이 81.9%로 가장 높고, 은행 8.3%, 기타 6.9%, 직판 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정보획득 용이' 66.7%, '가입 편리' 61.1% 등 편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가입이 편리한 채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II-8〉 개인별 사망보험 가입률(2019년)



자료: 보험연구원(2019)

〈그림 III-9〉 사망보험 가입채널 선호(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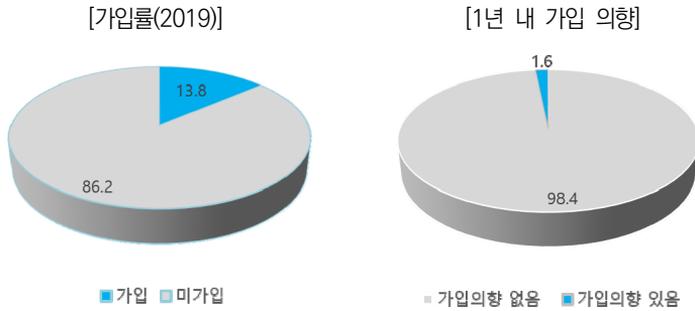


주: 채널 선호 이유는 복수응답임

자료: 보험연구원(2019)

우리나라의 가계 또는 개인이 노출된 위험에 비해 보험 가입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 즉 보장공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단위의 사망보험 가입률이 2019년 13.8%로 조사되었는데,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인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10〉 사망보험 가입률과 1년 내 가입 의향



자료: 보험연구원(2019)

2)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2020년 3/4분기 평균 56.1%에 달한다.⁶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금액은 금융기관 차입 시 1억 613만 원이며, 정부의 공적대출 프로그램 이용 시 6,276만 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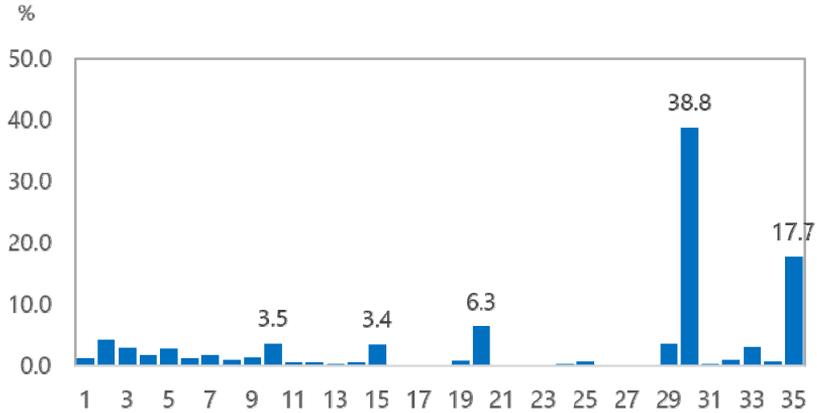
이들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은 최대 35년이다. 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30년 상환기간을 선택하는 비중은 38.8%, 35년 대출도 17.7% 수준이다.⁶⁵⁾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⁶⁶⁾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64) 한국은행(2020)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6.2%, 2018년 55.9%, 2019년 56.0%, 2020.3분기 56.2%로 나타나 일정하게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5) 관련 기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음

66) 이데일리(2020. 12. 8), “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그림 III-11〉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기간분포(2020. 3분기)



주: 가로 축은 기간(년)임
 자료: 관련 기관 내부자료임

대출기간이 장기간(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일 경우 차입자는 사망, 고도장해, 중대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의 경우 또는 40대 이후⁶⁷⁾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비용효율성이 높은 단체신용보험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감독체계 정비

1) 종목구분

신용생명보험은 19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독립적인 보험상품으로 정의되어 규제되고 있다. 대출기관이 방카슈랑스 방식으로 단체신용보험을 판매하면, 대출금융기관이 대표계약자(대출원금 + 이자 + 보험료 수취), 수익자(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하여 잔여 대출금 회수), 판매자(판매 수수료 수취)의 역할을 하게 된다.⁶⁸⁾ 상품구조상 소비자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에 엄격한

67) 2020년 3/4분기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자 중 40대와 50대 비중은 각각 29.7%, 50대 18.2%에 달함

규제감독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DCDS 경험을 통해 볼 때 유사상품과의 업무영역 다툼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신용보험' 종목과 구분하여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은 보증보험(Surety Bond)과 구별되는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용례에서는 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데 비해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신용보험은 주로 수출업자들이 매출채권의 대금 회수를 위해 가입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신용보험이 소비자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임을 감안하여 '소비자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상 명확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같이 큰 틀에서 생명보험 영역과 손해보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영역으로는 신용생명보험(사망보장)과 신용상해질병보험(상해/질병 시 소득보장)을, 손해보험 영역으로는 신용실업보험(비자발적 실업보장)과 신용재물보험을 두는 방식이다.⁶⁹⁾

신용보험에 대한 종목 구분 시 대출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소비자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이상이 대부분(10년: 3.5%, 20년: 6.3%, 30년: 38.8%, 35년: 17.7%) 장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신용 관련 신용보험과 초장기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보험을 구분하여 감독규정을 달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용거래 목적, 대상, 금액, 대출기간 등에 부합한 규제감독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단체계약과 개인계약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신용생명보험의 특성상 단체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언더라이팅을 간소화하는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단체보험계약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개인계약으로 정기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68) 국내 단체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대출금융기관인 대표계약자가 보험료를 수취하기 어렵고, 판매에 소요된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움

69) 뉴욕주 보험법(§2340)에서는 신용재물보험을 "insurance against loss of or damage to personal property covering a creditor's security interest in such property, when insurance is written as part of a credit transaction"이라고 정의하였음. 거래금액 \$250 이상일 경우 신용재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2) 소비자보호

해외사례 및 국내 DCDS 경험에서 나타난 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보험료(수수료) 징수로 요약된다. 불완전판매 이슈는 신용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보험료 부담, 보상범위 및 보상 제외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입 후 민원 및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규제로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이 적용된다. 특히 설명의무⁷⁰⁾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였다.⁷¹⁾ 명시적으로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하는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신용거래, 대출 승인 여부와 무관함
-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규가입이 불필요할 수 있음
- 보장범위와 관련 비용(보상 항목과 보상 제외 항목)
- 보험계약 취소권리 및 미경과보험료 환급

계약자가 일정기간 내 신용보험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숙려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청약철회기간을 30일 정도로 다른 보험에 비해 길게 두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도 있다.

70)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하였음

7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3. 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3) 가격 규제

DCDS 사례는 불투명한 가격책정이 신용보험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되고 있는 신용보험상품에 대해 엄격한 요율검증, 사업비 한도 규제를 두고 있다. <표 III-3>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35세 피보험자의 사망 및 고도장해 보장(보험 가입금액 1억 원, 3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보험료 수준은 21,300원(남자), 10,000원(여자) 수준이다. NAIC가 채택한 기준요율 방식으로 투명하게 가격을 설정하고, 조정한다면 채무자-채권자(대출금융기관)-보험회사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판매채널에 대한 사업비 규제도 두어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해서는 일반채널의 70% 수준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대리점의 수수료 편익(commission bias)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예: 신탁방식⁷²⁾) 검토도 필요하다.

신용보험시장이 일정 정도 활성화된 이후 시장신뢰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NAIC, SOA 사례와 같이 경험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용보험상품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대출 원리금에 포함(mark-up)시켜 징수하되, 대출 원리금 상환분과 보험료 부분을 구분 표기할 필요가 있다. 통합 징수함으로써 고객편익, 보험료 수금 비용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다. 경영전략

1) 정책자금 연계 단체계약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단체신용생명보험이라고 판단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고 시 대출잔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자만 가입할 수 있어 판매를 위해서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대출금융기관이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방식은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72) 신탁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이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계약자의 최선이익)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임

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집단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6천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일본의 '플랫35' 사례와 같이 주택금융공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계약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면, 저소득 계층, 신용도가 낮은 그룹,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들이 개인계약 방식으로 정기보험 청약 시 인수거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더라이팅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기보험과 신용생명보험 가입자 집단 구분이 가능해지고 틈새시장 형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2) 판매채널 확충

신용보험상품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지만 규제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는 꺾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뉴욕주는 단체신용보험을 '2인 이상 채권자의 수탁자/대리인에게 발행한 계약'으로 정의하고,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한 규제 여건은 호전되기 어렵다. 2021년 3월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보면, 기존 규제나 변경된 규제 모두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1% 초과 보험판매를 금지한다. 물론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대출금액 대비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판매계약으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기관이자 판매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을 취약차주로 구분하여 보장성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신용생명보험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택금융공사가 생명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계약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규제의 적용 제외가 필요할 것이다. 어찌보면, 이들이야말로 일반 정기보험 가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된 언더라이팅 요건이 적용되는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전략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단체계약 확대와 소비자경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경험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채널 전략의 수립도 핵심과제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대출실행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목표집단 설정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목표로 영업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청년층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은 2020년 3/4분기 말 260.2조 원(전세자금대출 87.6조 원, 주택담보대출 172.6조 원)에 달한다. 2020년 3/4분기 서울 및 수도권 주택거래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30대가 31.6%로 가장 높고, 40대 29.7%, 50대 18.2%, 60대 이상 16.6%, 20대 2.7% 순이다. 자산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⁷³⁾ 청년층의 취약차주 규모는 45.5만 명에 달하며, 여타 연령층에 비해 취약 차주 비중(청년층: 7.2% vs. 기타 연령층: 6.4%)이 높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시 위험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모바일 환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2020. 12)은 인터넷전문은행⁷⁴⁾ 출범, 핀테크 혁신 등에 따라 모바일 기반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된 것이 청년층의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핀테크 대출기업(FINDA)⁷⁵⁾과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신용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출기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계약으로 가입금액은 5,000만 원 한도이다.⁷⁶⁾ 신용생명보험의 효용성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큰 계약을 체결할 때 자발적으로 신용생명보험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73) 2020. 1~9월 연령계층별 주택매입자금 대비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20대 26.1%, 30대 29.1%, 40대 22.0%, 50대 16.7%, 60대 이상 9.2%로 나타남(한국은행 2020. 12)

74)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의 약 60%(케이뱅크 94만 명, 카카오뱅크 785만 명)를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함

75) 핀다(FINDA)는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대출 1호'로 선정된 이후 '비교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6) 매일경제(2020. 12. 1), "BNP파리바카디프생명-핀다, 대출금 갚아주는 보험서비스 맞손"

IV

맺음말

본고는 그간 활성화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시장 현황을 주요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규제 및 감독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신용생명보험상품은 차주의 사망, 상해, 질병 및 비자발적 실업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수단이기에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27.6% 정도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70%는 비자발적 실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2019).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신용보험이 민간 부문의 소비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WI Consult 2020). 이런 효용으로 주요 국가에서는 엄격한 규제하에 촘촘한 규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미국 뉴욕주에서는 단체계약에 대해 신탁방식을 적용하여 대출은행은 수탁자 자격으로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항목별 보수(fee)를 수취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시장이 성숙한 미국, 캐나다, 일본의 규제와 감독을 면밀히 살펴서 취약계층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2020. 12)은 현재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낮은 금리 수준,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신용위험이 현재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재정패널조사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보유비율은 37.1%이며, 평균 부채금액은 1억 1,222만 원 수준이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비율이 16.4%로 가장 높고, 보유한 부채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한다.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보유비율은 2.0%이며 평균 부채금액은 6,276만 원이다.

〈표 IV-1〉 부채 유형별 보유비율과 부채가구의 부채금액(2018년)

(단위: %, 만 원)

구분	전체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전세금, 임대 보증금
보유비율	37.1	2.0	0.6	16.4	11.1	1.3	12.1
부채금액	11,222	6,276	1,333	10,613	6,832	2,358	12,017

주: 1) 보유비율은 표본가구 대비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임

2) 부채금액은 부채가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차 가구 분석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고액화됨에 따라 사망, 장애/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 비자발적 실업 발생 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도 더 높아졌다. 주택은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며 신용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주는 틈새형 보험상품이다. '신용'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지만, 순수보장성 생명보험으로 차입자의 인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된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DCDS 사례는 신용생명보험의 잠재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이다. 판매채널에 게 적절한 유인체계가 제공될 경우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잠재 수요를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체보험방식이 적절하다. 국내에서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동 상품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연계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방식으로 가입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상품을 소비자 편의 증대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목의 재정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규제와 다른 관점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논의되고 미국, 캐나다와 같은 엄격한 별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신용생명보험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대출금융기관(특히, 은행)의 무관심도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미흡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대출금 상환을 보험사가 보장)이므로 가족 또는 유족에게 채무상속을 방지하거나 주거안정(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기여하고, 고객의 신용하락 위험을 방지한다. 또한, 대출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사망, 장애, 질병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보장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 결과, 은행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1,586조 원, 주택담보대출 89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생명보험은 잠재된 불안요인을 일부나마 제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이 신용생명보험에 관심이 낮은 것은 구속성보험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경우 감독기관 지침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관리·전산처리 및 기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고, 보험료 수취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보험의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창구와 보험창구가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객의 동선이 분리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보험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권리는 보호하되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고객의 가입 편의성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융기관(은행)의 신용평가모델(credit scoring model)에서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⁷⁷⁾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금리에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은행의 가산금리는 대출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과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아직까지 차주의 사망, 상해, 질병 등에 의한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신용평가모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보장성보험 판매 시 금리할인 혜택 제공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신용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의 금리혜택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대출 미회수 리스크를 차주의 신용리스크와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리스크로 구분하고, 신용생명보험 활용 시 은행의 리스크 헤지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필요한데, 이는 추가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2021년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기준금리가 2% 초반임을 감안하면, 신용생명보험 보험료로 12~26bp 정도를 부과해도 차입자가 부담하는 합산금리(대출이율 + 신용생명보험 보험료) 수준은 3%를 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집단을 대상으로 동 상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77) 8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임

생명보험에 대한 규제 및 감독정책이 사망·상해·질병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단의 보험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보험연구원(2019),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송윤아·마지혜(2016. 11. 14),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DCDS 운영사례」,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안철경·정인영(2018. 10. 1),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이석호(2008), 「DCDS(채무면제·유예)상품의 속성 및 보험업법 적용의 적절성 검토」, 『주간금융브리프』, 17권 45호
- 이지연(2018. 7), 「일본의 소비자대출 거래와 단체신용생명보험」, 『월간생명보험』
- 한국소비자원(2015. 12), 「신용카드사 부가상품(채무면제·유예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은행(2020. 12),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1차 가구 분석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채무면제 및 유예 계약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KB 지식비타민』, 14-34호
- Arcand, Jean Louis, Enrico Berkes, Ugo Panizza(2015), “Too Much Finance?”,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2), pp. 105~148
-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2020), *2019 Life Insurers Fact Book*
- Colquitt, Lee, Stephen Fier, Robert Hoyt, Andre Liebenberg(2012), “Adverse Selection in the Credit Insurance Market”(http://dx.doi.org/10.2139/ssrn.2024740)
- Durham, Ashley(2015), *2015 Insurance Barometer Study*, LIMRA
- Durkin, Thomas, Gregory Elliehausen(2017. 12. 1), “New Evidence on an Old Unanswered Question: Why Some Borrowers Purchase Credit Insurance and Other Debt Protection and Some Do Not”, *Divisions of Research & Statistics and Monetary Affairs Federal Reserve Board*
- Fagg, Gary, Angela Hammerly(1991), *A Study Guide for Credit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Creditre Corporation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20. 4),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Complaints
Deadline-Final Report

Frederick, Davis, Wayne E. Etter, Harry Blythe, and Peter Freund(1968), “The
Regulation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3(4), pp. 718~736

IMF(2017. 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 Growth at Risk?”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0), *2020 Life Insurance Fact Book*

Ipsos(2019), *Market Study 2019*

LIMRA(2020), “Canadian Life Insurance Ownership Report”

Lombardi, Macro, Madhusudan Mohanty, Ilhyock Shim(2017. 1), “The Real Effects of
Household Debt in the Short and Long Run”, BIS Working Papers, No. 607

NAIC(2018),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 Health Insurance Experience
2013~2017*

_____(2019), *NAIC Model Laws, Regulations, Guidelines and Other Resources*

Rubin, Harvey(1978), “Credit Life Insurance and Its Alternativ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1), pp. 145~153

RWI Consult(2020), “Overall Economic Importance of CPI in Relation to Consumer
Credits”

Sahay, Ratna, Martin Čihák, Papa N’Diaye, Adolfo Barajas, Srobona Mitra, Annette
Kyobe, Yen Nian Mooi, and Seyed Reza Yousefi(2015), “Financial Inclusion:
Can It Meet Multiple Macroeconomic Goals?”, IMF Staff Discussion Note
15/17, IMF

SOA(2018), *2017 Credit Life Mortality Study*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호

뉴욕주 보험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https://www.nysenate.gov/
legislation/laws/ISC](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ISC))

캘리포니아주 보험법(State of California Insurance Act, <http://www.insurance.ca.gov/>)

0250-insurers/0500-legal-info/0200-regulations/Index.cfm)

[국내 신용보험 관련 각 사 홈페이지]

르노캐피탈(<https://dev.renaultcapital.co.kr/mobile/prod/service/pay/view.rci>)

메트라이프생명(<https://www.metlife.co.kr/about-us/about-metlife/newsroom/newsroom-20160216/>)

신협공제(<https://openbank.cu.co.kr/?sub=6000>)

여신금융협회(<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etail22?cgcMode=22#!>)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https://www.cardif.co.kr/ko/home>)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https://www.cardifcare.co.kr/html/product/cpiplus_introduce.jsp)

[해외 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

뉴욕주 은행연합회(NYBA: New York Bankers Association, <https://www.nyba.com/>)

일본주택금융공사(<https://www.jhf.go.jp/loan/yushi/danshin/shin-danshin/index.html>)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mortgages>)

플랫35(<https://www.flat35.com/index.html>)

Canada Life(<https://www.canadalife.com/insurance.html>)

CIBC(<https://www.cibc.com/en/personal-banking/insurance/creditor/mortgages/life.html>)

First National(<https://www.firstnational.ca/mortgage-brokers/mortgage-solutions/home-warranty-and-mortgage-insurance>)

Home Trust(<https://www.hometrusted.ca/mortgages/insurance/>)

Manulife(<https://www.manulife.ca/personal/insurance/mortgage-protection-insurance.html>)

Royal Bank of Canada(<https://www.rbcroyalbank.com/mortgages/homeprotector-mortgage-insurance.html>)

Scotiabank(<https://www.scotiabank.com/ca/en/personal/creditor-insurance/creditor-insurance/scotia-mortgage-protection.html>)

SMBC Trust Bank(<https://www.smbctb.co.jp/en/product/loan/>)

Tokyo Star Bank(https://www.tokyostarbank.co.jp/products/loan/homeloan_starone/pdf/outline_en.pdf)

〈부록 표 1〉 미국 주별 신용보험 요율 및 보수 규제

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
		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Alabama	-	\$1.23/\$1000/월	\$1.30, \$2.20, \$1.90, \$2.70, \$3.50	-
Alaska	N/A	\$0.43/\$100/연	\$1.03~\$1.35	Life: p/f 대비 30% A&H: p/f 대비 26~34%
Arizona	Life: 50% A&H: 60%	\$0.30/\$100/연	\$0.83~\$1.72	-
Arkansas	50%	\$0.65/\$100/연	\$1.48~\$2.79	40% + 성과수당
California*	Life: 54.24~54.71% A&H: 54.91~74.58%	\$0.51~\$0.61/\$1000/월	\$0.77~\$4.34	Life: p/f 대비 35% A&H: p/f 대비 30% 채권자: p/f 대비 각각 27.5%, 23.75%
Colorado	40%	\$0.44/\$100/연	\$0.95~\$1.77	-
Connecticut	-	\$0.50/\$100/연	\$1.14~\$2.49	-
Delaware	50%	\$0.65/\$100/연	\$0.80~\$3.00	-
Dist. of Col.	-	-	-	-
Florida	Life: 55% A&H: 50%	L: \$0.82/\$100/연 D: \$0.44/\$100/연	\$0.72~\$1.76	-
Georgia	60%	\$0.45/\$100/연	\$0.80~\$2.20	-
Hawaii	60%	\$0.40/\$100/연	\$0.79~\$1.76	-
Idaho	50%	\$0.54/\$100/연	\$0.80~\$3.00	-
Illinois	A&H: 50%	\$0.47/\$100/연	\$1.15~\$3.00	-
Indiana	55%	\$0.65/\$1000/월	\$0.90~\$1.76	p/f 대비 40% (채권자: 33%)
Iowa	50%	\$0.45/\$100/연	\$0.66~\$1.81	-
Kansas	50%	L: \$1.20/\$100/연 D: \$0.65/\$100/연	-	-

〈부록 표 1〉 계속

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
		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Kentucky	-	L: \$1.20/\$100/연 D: \$0.60/\$100/연	\$0.91~\$2.69	-
Louisiana	-	L: \$1.60/\$100/연 D: \$0.80/\$100/연	\$0.85~\$10.00	prima facie rate + \$10.00
Maine**	Life: 63~75% A&H: 50~80%	\$0.50/\$1000/월	\$1.46~\$2.11	채권자: p/f 대비 10%(인가받은 대리점일 경우 5% 추가)
Maryland	55%	L: \$0.71/\$100/연 D: \$0.43/\$100/연	\$0.50~\$5.95	p/f 대비 36% (채권자: 32%)
Massachusetts	Life: 50% A&H: 55%	\$0.69/\$1000/월	\$0.70(최초 4년) + \$0.50(3년) + \$0.25(이후)/\$100/월	-
Michigan	60%	\$0.48/\$100/연	\$1.50~\$2.20	-
Minnesota	50%	\$0.40/\$100/연	\$0.89~\$1.88	-
Mississippi	N/A	L: \$1.60/\$100/연 D: \$0.80/\$100/연	-	45%
Missouri	35%	L: \$1.10/\$100/연 D: \$0.550/\$100/연	\$0.80~\$3.00	40%
Montana	Life: 38.5% A&H: 55%	\$0.80/\$1000/월	\$0.41~\$6.18	37.5% (일반대리점: 7.5%)
Nebraska	45~50%	L: \$0.92/\$100/연 D: \$0.50/\$100/연	\$0.56~\$1.51	채권자 30%
Nevada	-	\$0.72/\$1000/월	\$0.55~\$2.06	-
New Hampshire	Life: 50% A&H: 60%	\$0.36~0.48/\$100/연	\$1.515~\$1.987	-
New Jersey	40~65%	\$0.40/\$100/연	\$0.94~\$1.99	한도 없음
New Mexico	55%	\$0.39/\$100/연	\$0.80~\$1.25	-
New York	Life: 65~71% A&H: 62~69%	\$0.56~\$0.72/\$1000/월	\$1.17~\$2.21	대출기관이 실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
North Carolina	-	L: \$1.10/\$100/연 D: \$0.50/\$100/연	\$0.95~\$2.60	-
North Dakota	45%	\$0.62/\$1000/월	\$0.94~\$1.88	-
Ohio	Life: 50% A&H: 60%	\$0.41/\$100/연	\$0.70~\$1.32	없음
Oklahoma	-	\$0.68/\$100/연	\$0.80~\$3.00	채권자: 40%, 일반대리점: 10%

〈부록 표 1〉 계속

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
		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Oregon	60%	L: \$0.68/\$1000/월 D: \$0.59/\$1000/월	\$1.26~\$1.89	-
Pennsylvania	Life: 55% A&H: 60~65%	\$0.45/\$100/연	\$1.67~\$2.43	Life: 27% + 3%(일반대리점) A&H: 21% + 4%(일반대리점)
Puerto Rico	-	\$0.65/\$100/연	없음	채권자: 20%
Rhode Island	60%	\$0.66/\$1000/월	\$0.90~\$3.05	30% (채권자: 25%)
South Carolina	Non-life: 50%	\$0.55/\$1000/월	\$1.44~\$1.53	-
South Dakota	50%	\$0.60/\$100/연	\$0.72~\$1.98	40%
Tennessee	A&H: 50%	\$0.66/\$100/연	\$1.48~\$2.79	40%
Texas	소매상: 43% 기타: 48%	\$0.241(소매상), \$0.316(기타)/\$100/ 연	소매상: \$0.993~\$1.70 기타: \$1.32~\$2.26	관련 비용을 감독청장에게 보고
Utha	Life: 50% A&H: 55%	\$0.4225/\$100/연	\$1.41~\$1.88	-
Vermont	Life: 60% A&H: 70%	\$0.55/\$100/연	\$0.96~\$2.01	
Virginia	60%	\$0.6456/\$100/연	\$1.14~\$2.40	-
Washington	60%	\$0.60/\$1000/월	\$0.86~\$1.85	30% (채권자: 25%)
West Virginia	60%	\$0.65/\$100/연	6개월 기왕증 부담보: \$1.30~\$1.90 기타: \$1.45~\$2.15	-
Wisconsin	Life: 44% A&H: 52~60%	\$0.41/\$100/연	\$0.70~\$1.52	-
Wyoming	-	\$0.50/\$100/연	\$0.80~\$3.00	30% + 7.5%(일반대리점)

주: 1) Life = 신용생명보험, A&H = 신용상해질병보험, L = 평준정기보험, D = 체감정기보험, p/f = prima facie premium

2) * 대출기관 유형별, 피보험자 단생 또는 연생, 만기 10년 이하 신용보험만 적용

3) ** 개인의 건강 관련 질문 시 10% 할인해야 함

자료: NAIC(2018)

1. 신용생명보험/신용상해질병보험(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185.1 정의(definition)

185.2 채무자의 기존 보유계약 및 보험회사 선택

185.3 보험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185.4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 양식

185.5 계약서 조항 및 채무자에 대한 공시

185.6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185.7 보험료와 식별 가능한 부과

185.8 보험료 환급

185.9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비용(Commissions and fees or other allowances)

185.10 배당금

185.11 보험금 지급

185.12 경험통계

185.13 개방형 부채와 비용 부과(Open-end loans and charge plans)

185.14 부동산 모기지담보거래에 대한 신용보험 특별 규정

185.15 금지행위

185.16 분리 규정

78) Official Compilation of Code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Title 11. Insurance, Chapter VII. Credit and Creditor Insurance

2. 신용재물보험(Part 186 Insurance Covering Debtors or Personal Property Purchased on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Plans)

186.1 적용 대상: 신용(외상 할부)거래의 채권자/채무자, 구입한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함

186.2 정의: 신용거래의 일부로 체결되어 개인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장 제공, 담보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포함

186.3 피보험자에 대한 공시: 보험보장 대상, 기간 등

186.4 채무자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통지

186.5 채무자의 기존 보유계약 및 보험회사 선택

186.6 보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제한

186.7 채권자의 계약 취소

186.8 보험료 환급

186.9 보험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186.10 경험통계

186.11 미경과보험료, 배당금

186.12 데이터 보관

186.13 보험금 지급심사

3. 신용실업보험(Part 187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 187.1 정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동안 분할납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 187.2 신용실업보험 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 187.3 신용실업보험 양식
- 187.5 신용실업보험 증서 내용 및 채무자에 대한 공시
- 187.6 보험료와 식별가능한 부과
- 187.7 보험료 환급
- 187.8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비용
- 187.9 배당금
- 187.10 보험급여 지급
- 187.11 경험통계
- 187.12 개방형 부채와 비용 부과(Open-end loans and charge plans)
- 187.13 금지행위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이경희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부 부교수
E-mail : khlee@smu.ac.kr

연구보고서 2021-03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44-0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